

● 제293회(폐회중)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0. 5. 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481

###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 : 2020. 5. 4.

다. 회부일 : 2020. 5. 4.

####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 가. 세입예산

###### (1) 여성가족정책실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조 6,461억으로 당초보다 2천5백만원(0.0%)이 감액되었음.
- 세입 감액의 주요 원인은 중앙부처(여성가족부) 사업취소로 인한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의 감액으로 국고보조금은 1조 1,729억 1천5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 감소(0.0%)한 1조 1,728억 9천만원임.

〈여성정책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420,547	1,646,142	1,646,167	△25(0.0)
일반회계	1,410,630	1,632,225	1,632,250	△25(0.0)
세외수입	경상적	606	667	-
	임시적	56,579	68,834	-
지방교부세	-	-	-	-
국고보조금 등	999,261	1,172,890	1,172,915	△25(0.0)
지방채	-	23,500	23,50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4,184	366,334	366,334	-
균형발전특별회계	9,917	13,917	13,917	-
국고보조금 등	9,917	13,917	13,917	-

(2) 복지정책실

- 복지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조 8,891억 5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64억 9천 8백만원(0.3%)이 감액되었음.
- 세입 감액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량 감소 및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 등이며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3조 3,404억 8천 5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0억 2백만원(0.03%)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275억 6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75억 감액되었음

〈복지정책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4,232,108	4,889,105	4,905,603	△16,498(△0.30)
일반회계	2,780,251	3,406,386	3,405,384	1,002(0.03%)
세외수입	경상적	13,851	14,005	-
	임시적	39,635	40,433	-
지방교부세	432	170	170	-
국고보조금 등	2,713,016	3,340,485	3,339,483	1,002(0.03%)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	13,318	11,293	11,293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51,857	1,482,719	1,500,219	△17,500(△1.17%)
세외수입	임시적	2,621	2,905	-
	국고보조금 등	678,572	752,308	752,308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	770,664	727,506	745,006	△17,500(△2.35%)

(3) 시민건강국

- 시민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993억 4천 8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 2천 1백만원(0.1%)이 감액되었음.
- 세입 감액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의 감액으로 국고보조금은 1,315억 7천만원에서 1억 2천 1백만원 감소(0.1%)한 1,314억 4천 9백만원임.

〈시민건강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90,340	199,348	199,469	△121(△0.1)	
세외	경상적	40,795	40,791	40,791	0(0.0)
수입	임시적	20,831	25,111	25,111	0(0.0)
지방교부세	-	1,040	1,040	1,040	0(0.0)
국고보조금 등	127,928	131,449	131,570	△121(△0.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86	957	957	0(0.0)	

나. 세출예산

(1) 여성가족정책실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조 783억 2천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2억 2천5백만원(△0.4%) 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여성가족정책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2,761,960	3,078,329	3,091,554	△13,225(△0.4)
행정운영경비	741	763	763	-
재무활동	5,056	13,492	13,492	-
사업비	2,756,163	3,064,074	3,077,299	△13,225(△0.4)

(2) 복지정책실

- 복지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8조 740억 3천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30억 4천3백만원(0.8%)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복지정책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7,020,115	8,074,032	8,137,075	△63,043(0.8)
행정운영경비	752	697	697	-
재무활동	768,910	925,074	945,211	△20,137(2.1)
사업비	6,250,453	7,148,261	7,191,167	△42,906(0.6)

(3) 시민건강국

- 시민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4,908억 7천 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2억 3천 7백만원(1.5%) 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시민건강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487,022	490,872	498,109	△7,237(1.5)
행정운영경비	8,063	7,977	7,977	0(0)
재무활동	599	50	435	△385(△88.5)
사업비	478,360	482,845	489,697	△6,852(△1.4)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국내외 피해 확산과 전세계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정부의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매칭분(국비 포함 2조 1천63억원)의 확보와 자영업자 생존자금(3천256억원),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344억원) 등의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예산을 총 1조1천591억원조정하는 안임.
- 이는 소비위축과 일자리 감소 및 그에 따른 소득감소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출예산의 재조정을 통해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부나마 보전하고, 민간소비 감소( $\Delta 6.4\%$ )<sup>1)</sup>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감액임.
- 이미 서울시는 지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하여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 바 있으나, 금번 추경안은 전국민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출을 조정한 것으로 서울시는 기존에 지급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금번 정부추경으로 인해 추가되는 재난긴급생활비는 중복하여 지급될 예정임.

1)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2020년 3월 고용동향」, 2020.4.17.; 2월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 $\Delta 18.1\%$ ), 예술·스포츠·여가( $\Delta 27.2\%$ )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Delta 3.5\%$  감소함(통계청, 2020.3.31.). 2월 종사자 수 역시 숙박·음식점( $\Delta 4.2\%$ )과 예술·스포츠서비스업( $\Delta 2.0\%$ )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대구( $\Delta 0.2\%$ )와 경북( $\Delta 0.2\%$ )에서는 전업종의 종사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음(고용노동부, 2020.4.1.)



- 코로나 19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현금급여의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감액조정을 담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가족정책실 18개 사업 132억원, 복지정책실 24개 사업 704억 2백만원, 시민건강국 26개 사업 74억1천8백만원에 대한 감액안이 제출되었으며 증액사업의 경우 복지정책실 1개 사업(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74억 원 및 시민건강국 1개 사업(안심호흡기센터) 1억 8천만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음.

## 2 세입 및 세출 총괄

### 가. 여성가족정책실

#### 1. 세입

##### 1) 세입예산 총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3조 783억 2천 9백만원으로 제1차 추경안에서 1,718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던 것을, 제2차 추경을 통해 2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세입 감액은 서울시 사업이 전면 취소된 국고보조금 2천 5백만원을 삭감하려는 것임.

<표> 여성가족정책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추경 예산안	19년 대비 증감율	20년 대비 증감율	
		제1회 추경예산 (증감액)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기정 예산				
합 계	1,420,547	171,819	△25	1,474,348	1,646,142	15.9%	11.7%	
일반회계	1,410,630	171,819	0	1,460,431	1,632,225	15.7%	11.8%	
세외수입	경상적	606	-	-	667	667	10.1%	0.0%
	임시적	56,579	-	-	68,834	68,834	21.7%	0.0%
지방교부세	-	-	-	-	-	-	-	-
국고보조금 등 <sup>2)</sup>	999,261	171,819	△25	1,001,096	1,172,890	17.4%	17.2%	
지방채	-	-	-	23,500	23,500	-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4,184	-	-	366,334	366,334	3.4%	0.0%	
균형발전특별회계	9,917	0	0	13,917	13,917	40.3%	0.0%	
국고보조금 등	9,917	-	-	13,917	13,917	40.3%	0.0%	

2. 세출

1) 세출예산 총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조 783억 2천 9백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3,163억 6천 9백만원(11.5%)이 증액되었으나, 2020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해보면 132억 2천 5백만원(0.5%)이 감액된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 기정예산에는 '어린이집마스크 및 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 등 4개 사업 685백만원이 간주처리예산으로 포함됨.

<표> 여성가족정책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 도			추경 예산안	19년 대비 증감율	20년 대비 증감율
		제1회 추경 예산 (증감액)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기정 예산			
합 계	2,761,960	179,517	△ 13,225	2,912,038	3,078,329	11.5%	5.7%
행정운영경비	741	-	-	763	763	3.0%	0.0%
재무활동	5,056	-	-	13,492	13,492	166.9%	0.0%
사업비	2,756,163	179,517	△ 13,225	2,897,783	3,064,074	11.2%	5.7%

2) 부서별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추경안은 보육담당관이 2건, 64억 8천 9백만원으로 감액이 가장 크고, 그 뒤를 이어 아이돌봄담당관 3건, 54억 8천 1백만원 감액, 가족담당관 8억 3천 4백만원, 여성정책담당관 7건, 3억 4백만원, 여성권익담당관 1건, 1억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건, 1천 7백만원 순으로 감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제1차 추경에서 어린이집 방역 지원과 아동양육 한시지원이 증액 편성된 바, 2020년 본예산 대비 예산이 줄어든 규모는 아이돌봄담당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여성가족정책실 각 과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예산 (A)	기정 예산 (B)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C)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D)	추경 예산(안) (E=B+C+D)	(19대비) 증감률 (E/A)	본예산 대비 증감 (E/B)
계	2,761,960	2,912,038	179,517	△ 13,225	3,078,329	11.5%	5.7%
여성정책 담당관	65,762	85,071	-	△ 304	84,767	28.9%	△ 0.4%
여성권익 담당관	39,453	40,587	-	△ 100	40,487	2.6%	△ 0.2%
보육담당관	1,869,022	1,904,525	12,410	△ 6,489	1,910,446	2.2%	0.3%
가족담당관	641,384	688,011	166,327	△ 834	853,504	33.1%	24.1%
아이돌봄 담당관	120,871	167,392	780	△ 5,481	162,691	34.6%	△ 2.8%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24,712	25,268	-	△ 17	25,251	2.2%	△ 0.1%
아동복지센터	756	1,184	-	-	1,184	56.6%	0.0%

**3)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실 세출예산 추경안은 총 18개 사업, 132억 2천 5백만원이 모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로 민생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 집, (일반, 융합형)키움센터, 열린육아방의 확충 물량 조정 등으로 인한 감액 4건, 104억 8천 1백만원<sup>3)</sup>이 전체의 79.3%를 차지함.
- 그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시설휴관, 사업 축소 및 미추진 등으로 인한 감액 6건, 3억 1천 1백만원<sup>4)</sup>과 집행율과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불용예상액 8건, 24억 3천 3백만원<sup>5)</sup>을 감액 편성하였음.

3) 세부사업 추경예산안 중 붉은 글씨 사업 4건  
 4) 세부사업 추경예산안 중 파란 글씨 사업 6건  
 5) 세부사업 추경예산안 중 검정 글씨 사업 8건

<표> 여성가족정책실 세부사업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A)	기정 예산 (B)	제1회 추가경 정예산 (C)	제2회 추가경 정예산 안(D)	추경 예산(안) (E=B+C+ D)	(19대비) 증감률 (E/A)	본예산 대비 증감 (E/B)
	총계	2,761,960	2,912,038	179,517	△ 13,225	3,078,329	11.5%	5.7%
	여성정책담당관	65,762	85,071	-	△ 304	84,767	28.9%	△ 0.4%
1	서울여성공예 센터 운영	2,016	2,223	-	△ 70	2,153	6.8%	△ 3.1%
2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1,562	1,788	-	△ 46	1,742	11.5%	△ 2.6%
3	안심귀가스카우트	4,867	5,741	-	△ 50	5,691	16.9%	△ 0.9%
4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165	192	-	△ 30	162	△ 1.8%	△ 15.6%
5	성평등 청년 네트워크 지원사업	-	36	-	△ 36	-0	-	△ 100.0%
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 성 근로자 지원	100	95	-	△ 20	75	△ 25.0%	△ 21.1%
7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058	3,126	-	△ 53	3,073	49.3%	△ 1.7%
	여성권익담당관	39,453	40,587	-	△ 100	40,487	2.6%	△ 0.2%
8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6,221	7,031	-	△ 100	6,931	11.4%	△ 1.4%
	보육담당관	1,869,022	1,904,525	12,410	△ 6,489	1,910,446	2.2%	0.3%
9	어린이복합문화 시설 건립	-	1,708	-	△ 1,489	219	-	△ 87.2%
1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4,193	80,000	-	△ 5,000	75,000	38.4%	△ 6.3%
	가족담당관	641,384	688,011	166,327	△ 834	853,504	33.1%	24.1%
11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311	1,372	20	△ 60	1,332	1.6%	△ 2.9%
12	가족학교 운영지원	1,111	1,280	-	△ 35	1,245	12.1%	△ 2.7%

연 번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A)	기정 예산 (B)	제1회 추가경 정예산 (C)	제2회 추가경 정예산 안(D)	추경 예산(안) (E=B+C+ D)	(19대비) 증감률 (E/A)	본예산 대비 증감 (E/B)
13	출생축하용품 지원	6,693	4,674	-	△ 400	4,274	△ 36.1%	△ 8.6%
14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3,009	3,495	-	△ 340	3,155	4.9%	△ 9.7%
아이돌봄담당관		120,871	167,392	780	△ 5,481	162,691	34.6%	△ 2.8%
15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2,613	5,510	-	△ 1,400	4,110	57.3%	△ 25.4%
16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1,259	2,892	-	△ 437	2,455	95.0%	△ 15.1%
17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5,591	18,672	-	△ 3,644	15,028	168.8%	△ 19.5%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4,712	25,268	-	△ 17	25,251	2.2%	△ 0.1%
18	세계인의 날 행사 운영	17	17	0	△ 17	0	△ 100.0%	△ 100.0%
아동복지센터		756	1,184	-	-	1,184	56.6%	0.0%

## 나. 복지정책실

### 1. 세입

#### 1) 세입예산 총괄

- 복지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조 8,891억 5백만원으로 제1차 추경안에서 1,982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던 것을, 제2차 추경을 통해 164억 9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세입 증액은 국고보조금이 10억 2백만원으로 저소득층 한시지원사업에 대하여 74억원이 증액되고,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외 4개 사업에서 64억이 감액이 반영된 것이며, 의료기금특별회계를 175억 감액해, 1조 4,827억으로 편성하였음.

<표> 복지정책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추경 예산안	19년 대비 (비율)	20년 대비 비율 (비율)	
		제1회 추경 예산 (증감액)	제2회 추경 예산 (증감)	기정예산				
합계	4,232,108	198,223	△ 16,498	4,707,380	4,889,105	656,997 (15.5)	181,725 (3.9)	
일반회계	2,780,251	198,223	1,002	3,207,161	3,406,386	626,135 (22.5)	199,225 (6.2)	
세외수입	경상적	13,851	-	-	14,005	14,005	154 (1.1)	0 (0.0)
	임시적	39,635	-	-	40,433	40,433	798 (2.0)	0 (0.0)
지방교부세	432	-	-	170	170	△ 262 (△ 60.6)	0 (0.0)	
국고보조금 등 <sup>6)</sup>	2,713,016	198,223	1,002	3,141,260	3,340,485	627,469 (23.1)	199,225 (6.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318	-	-	11,293	11,293	△ 2,025 (△ 15.2)	0 (0.0)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1,451,857	-	△ 17,500	1,500,219	1,482,719	30,862 (2.1)	△ 17,500 (△ 1.2)	
세외수입	임시적	2,621	-	-	2,905	2,905	284 (10.8)	0 (0.0)
국고보조금 등	678,572	-	-	752,308	752,308	73,736 (10.9)	0 (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70,664	-	△ 17,500	745,006	727,506	△ 43,158 (△ 5.6)	△ 17,500 (△ 2.3)	

6)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국비 3억원 포함 (간주처리)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6억원 포함 (간주처리)

## 2. 세출

### 1) 세출예산 총괄

- 복지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8조 740억 3천 2백만원으로 기존 '20년도 예산보다 4,319억 2천 4백만원(5.3%)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19년도와 대비하여 재무활동비 증가의 원인은 202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재난긴급생활비가 지출되었기 때문임.

**<표> 복지정책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 도			추경 예산안	19년 대비 (비율)	20년 대비 (비율)
		제1회 추경 예산 (증감액)	제2회 추경 예산 (증감액)	기정 예산			
합 계	7,020,115	431,924	△ 63,043	7,705,151	8,074,032	1,116,960 (15.9)	431,924 (5.3)
행정운영경비	752	-	-	697	697	△ 55 (△ 7.3)	0 (0.0)
재무활동	768,910	200,000	△ 20,137	745,211	925,074	176,301 (22.9)	200,000 (21.2)
사업비	6,250,453	231,924	△ 42,906	6,959,243	7,148,261	940,714 (15.1)	231,924 (3.2)

### 2) 부서별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 소관 과별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자활지원과 순으로 추경금액이 큰 것



으로 나타남.

<표> 복지정책실 각 과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예산 (A)	기정예 산 (B)	제1회 추가경 정예산 (C)	제2회추 가경정 예산안 (D)	추경 예산(안) (E=B+C+ D)	(19대비) 증감률 (E/A)	본예산대비 증감 (E/B)
계	7,020,114	7,705,150	431,924	△63,043	8,074,032	11.5%	5.7%
복지정책과	3,115,421	3,311,824	371,205	△36,020	3,647,009	28.9%	△0.4%
지역돌봄 복지과	245,343	262,552	45,278	△2,244	305,586	2.6%	△0.2%
어르신 복지과	2,278,495	2,585,269	728	△9,578	2,576,419	2.2%	0.3%
장애인복지 정책과	292,964	320,781	14,325	△3,836	331,270	33.1%	24.1%
장애인자립 지원과	236,934	269,946	248	△4,760	265,434	34.6%	△2.8%
자활지원과	682,953	752,739	-	△1,840	750,899	2.2%	△0.1%

### 3) 세부사업별

- 복지정책실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 총 7건, 105억원, 집행률 추이 등을 고려한 불용예상액 발생 사업 총 13건, 532억원, 국비내시액 변경에 따른 감액 사업 4건, 67억원, 국비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액 사업 1건, 74억원으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표> 복지정책실 세부사업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A)	기정예산 (B)	제1회 추가경정예산 (C)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D)	추경 예산(안) (E=B+C+D)	(19대비) 증감률 (E/A)	본예산 대비 증감 (E/B)
	총계	7,020,114	7,705,150	431,924	△63,042	8,074,032	15.0%	4.8%
	복지정책과	3,115,421	3,311,824	371,205	△36,020	3,647,009	17.1%	10.1%
1	보훈대상자 등 지원	52,403	57,871	-	△500	57,371	9.5%	-0.9%
2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	16,108	-	△307	15,801	-	-1.9%
3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	0	171,205	7,360	178,565	-	-
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8,371	28,991	-	△3,500	25,491	204.5%	-12.1%
5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32,359	38,636	-	△1,396	37,240	15.1%	-3.6%
6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397	472	-	△40	432	8.8%	-8.5%
7	의료급여사업	1,449,327	1,497,708	-	△17,500	1,480,208	2.1%	-1.2%
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	768,572	742,308	-	△20,000	722,308	-6.0%	-2.7%
9	국고보조금 반환	-	307	-	△137	170	-	-44.6%
1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	0	200,000		200,000	-	-
	지역돌봄복지과	245,343	262,552	45,278	△2,244	305,586	24.6%	16.7%
1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1,037	94,514	155		94,669	4.0%	0.2%
12	서울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3,066	12,536	-	△2,244	10,292	235.7%	-17.9%
1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	636	20,546		21,182	-	-
14	서울시 재난	-	0	24,577		24,577	-	-

연 번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A)	기정예 산 (B)	제1회 추가경 정예산 (C)	제2회 추가경 정예산 안(D)	추경 예산(안) (E=B+C+ D)	(19대비) 증감률 (E/A)	본예산 대비 증감 (E/B)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							
	어르신복지과	2,278,495	2,585,269	728	△9,578	2,576,419	13.1%	-0.3%
15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14,710	20,411	-	△4,100	16,311	10.9%	-20.1%
16	어르신데이케 어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5,871	15,296	-	△900	14,396	-9.3%	-5.9%
17	코로나19 대응 어르신복지시 설 방역비 지원	-	0	728		728	-	-
18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700	4,678	-	△4,578	100	-85.7%	-97.9%
	인생이모작지원과	292,964	320,781	14,325	△3,836	331,270	13.1%	3.3%
19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146,125	165,839	14,123		179,963	23.2%	8.5%
20	보람일자리 사업	10,916	10,916	-	△1,092	9,824	-10.0%	-10.0%
21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14,165	15,265	-	△1,400	13,865	-2.1%	-9.2%
22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시직속)	4,393	5,425	202	△844	4,782	8.9%	-11.8%
23	50+캠퍼스 확충	17,414	13,788	-	△200	13,588	-22.0%	-1.5%
24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5,740	5,616	-	△300	5,316	-7.4%	-5.3%
	장애인복지정책과	236,934	269,946	248	△4,760	265,434	12.0%	-1.7%
25	장애인지원주택 운영	-	3,057	-	△400	2,657	-	-13.1%
2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00,095	111,287	-	△700	110,587	10.5%	-0.6%

연번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A)	기정예산 (B)	제1회 추가경정예산 (C)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D)	추경 예산(안) (E=B+C+D)	(19대비) 증감률 (E/A)	본예산 대비 증감 (E/B)
27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	6,100	-	△3,660	2,440	-	-60.0%
28	코로나19 대응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비 지원	-	-	248		248	-	-
장애인자립지원과		682,953	752,739	-	△1,840	750,899	9.9%	-0.2%
29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513	6,060	-	△1,620	4,440	766.2%	-26.7%
30	구립강북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 건립	-	885	-	△220	665	-	-24.9%
자활지원과		168,004	202,040	140	△4,764	197,416	17.5%	-2.3%
31	코로나19 대응 노숙인시설 방역비 지원	-	0	140		140	-	-
32	자활근로사업 지원	84,692	109,561	-	△1,078	108,483	28.1%	-1.0%
33	자활장려금	6,660	4,936	-	△3,686	1,250	-81.2%	-74.7%

## 다. 시민건강국

### 1. 세입

#### 1) 세입예산 총괄

- 시민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은 1,993억 4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23억 4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름. 국고보조금의 경우 1,291억 3백만원에서 1,314억 4천 9백만원으로 1.9% 증가하였음.

## <표> 시민건강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 도			추경 예산안	19년 대비 증감 (비율)	20년 대비 증감 (비율)
		제1회 추경 예산(증감)	제2회 추경 예산(증감)	기정예산			
합 계	190,340	2,467	△ 121	197,002	199,348	9,008 (4.7)	2,346 (1.2)
일반회계	190,340	2,467	△ 121	197,002	199,348	9,008 (4.7)	2,346 (1.2)
세외수입							
경상적	40,795	-	-	40,791	40,791	△ 4 (0.0)	0 (0.0)
임시적	20,831	-	-	25,111	25,111	4,280 (20.5)	0 (0.0)
지방교부세	-	-	-	1,040 <sup>7)</sup>	1,040	1,040	0 (0.0)
국고보조금 등	127,928	2,467	△ 121	129,103 <sup>8)</sup>	131,449	3,521 (2.8)	2,346 (1.9)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86	-	-	957	957	171 (21.8)	- (0.0)

## 2. 세출

### 1) 세출예산 총괄

- 시민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4조 908백억 7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백억 7천 1백만원(1%)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

7) 간주처리 내역 : (특별교부금)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1,040,000천원(제5차 간주처리 '20.3.10.)

8) 간주처리 내역 : (국고보조금)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100,000천원(제5차 간주처리 '20.3.10.), (국고보조금)정신요양시설 방역물품 지원 672천원(제5차 간주처리 '20.3.10.), (국고보조금)서북병원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지원 25,000천원(제5차 간주처리 '20.3.10.), (국고보조금)급성감염병 격리 치료비 3,000천원(제6차 간주처리 '20.3.31.), (국고보조금)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5,000천원(제6차 간주처리 '20.3.31.), (국고보조금)코로나19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지정 265,000천원(제6차 간주처리 '20.3.31.), (국고보조금)코로나19 입원치료병상 징비지원 750,000천원(제6차 간주처리 '20.3.31.), (기금)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유지비 38,900천원(제6차 간주처리 '20.3.31.)

역은 다음과 같음.

<표> 시민건강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추경 예산안	19년 대비 증감 (비율)	20년 대비 증감 (비율)
		제1회 추경 예산(증감)	제2회 추경 예산(증감)	기정예산			
합 계	487,022	2,467	△7,238	495,642	490,872	3,849 (0.8)	△4,771 (△1.0)
행정운영 경비	8,063	-	-	7,977	7,977	△86 (△1.1)	-
재무활동	599	-	△385	435	50	△549 (△91.7)	△385 (△88.5)
사업비	478,360	2,467	△6,853	487,230	482,844	4,484 (△0.9)	△4,386 (△0.9)

## 2) 부서별 세출예산

- 시민건강국 소관 과별 세출예산은 동물보호과가 4.7%로 가장 크게 감액되었으며, 식품정책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책과 등이 각각 1.8%, 1.6%, 1.1%가 감액추경되어 편성됨.

<표> 시민건강국 각 과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예산 (A)	기정예산 (B)	제1회 추가경정 예산 (C)	제2회추가경정예산안(D)	추경 예산(안) (E=B+C+D)	(19대비) 증감률 (E/A)	본예산대비 증감 (E/B)
계	487,022	495,642	2,467	△7,238	490,872	0.8	△1.0
보건정책과	162,983	159,533 <sub>9)</sub>	2,467	△4,210	157,790	△3.3	△1.1
건강증진과	130,278	145,665	-	△2,314	143,351	9.1	△1.6
식품정책과	10,861	12,324	-	△215	12,109	10.3	△1.8
질병관리과	127,965	121,153 <sub>10)</sub>	-	△28	121,125	△5.6	0.0
동물보호과	6,512	6,138	-	△274	5,865	△11.0	△4.7
보건행정지원	15,585	21,597	-	△197	21,400	27.2	△0.9
어린이병원	8,601	9,616	-	-	9,616	10.6	0.0
은평병원	7,151	7,343	-	-	7,343	2.6	0.0
서북병원	17,086	12,272 <sub>11)</sub>	-	-	12,272	△39.2	0.0

### 3) 세부사업별

#### (1) 보건 의료 정책과

○ 대상사업은 총 12건으로 증액사업 1건 1억 80백만원, 감액사업 11건 △43억 9천 2백만원으로 추경(안)의 사업(신규사업 포함)은 다음과 같음.

- 신규사업은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설계변경

9) 간주처리 내역 :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100,000천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1,040,000천원, 정신요양시설 방역물품 지원 672천원

10) 간주처리 내역 : 급성감염병 격리 치료비 3,000천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유지비 38,900천원,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5,000천원, 코로나19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지정 265,000천원, 코로나19 입원치료병상 징비지원 750,000천원

11) 간주처리 내역 : 서북병원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지원 25,000천원

용역비 1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33억 8천 6백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전액감액되었음.

<표> 세부사업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연번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A)	기정 예산 (B)	제1회 추가경정예산 (C)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D)	추경 예산(안) (E=B+C+D)	(19대비) 증감률 (E/A)	본예산 대비 증감 (E/B)
	보건의료정책과	162,983	159,533	2,467	△4,212	157,788	△3.2	△1.1
1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5,364	3,386	-	△3,386	-	△100.0	△100.0
2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151	151	-	△45	106	△29.8	△29.6
3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	-	-	180	180	신규	신규
4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428	411	-	△50	361	△15.7	△12.2
5	시민건강포인트 운영	648	953	-	△89	864	33.3	△9.3
6	간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4,846	3,951	-	△150	3,801	△21.6	△3.8
7	세이프약국 운영	689	689	-	△170	519	△24.7	△24.6
8	안전망병원 운영	452	319	-	△32	287	△36.5	△10.0
9	재난대비 전문 의료인력 확보 지원	100	100	-	△30	70	△30.0	△30.0
10	보건소 구급차 지원	-	-	2,467	-	2,467	신규	신규
11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238	238	-	△175	63	△73.5	△73.6
12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3,141	3,467	-	△265	3,203	2.0	△7.6



## (2) 건강증진과

- 대상사업은 총 6건으로 모두 감액사업으로 △ 23억 14백만원으로 추경(안)의 주요사업안은 다음과 같음.
- 주로 사업계획이 축소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이용자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감액된 것임. 신규사업인 “모자건강센터 설치 운영”사업의 경우 자치구의 공모전수 미달 등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음.

**<표> 세부사업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연번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A)	기정 예산 (B)	제1회 추가경정예산 (C)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D)	추경 예산(안) (E=B+C+D)	(19대비) 증감률 (E/A)	본예산 대비 증감 (E/B)
	건강증진과	130,278	145,665	-	△2,314	143,351	10.0	△1.6
1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2,487	2,479	-	△284	2,196	△11.7	△11.4
2	비만예방 사업	1,080	1,080	-	△185	895	△17.1	△17.1
3	난임부부 지원	5,714	7,150	-	△112	7,038	23.2	△1.6
4	모자건강센터 설치 운영	0	1,200	-	△750	450	신규	△62.5
5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지원	1,040	2,100	-	△599	1,501	44.3	△28.5
6	국고보조금 반환	66	385	-	△385	-	△100.0	△100.0

## (3) 식품정책과

- 대상사업은 총 2건 모두 감액사업으로 △ 2억 15백만원으로 추경(안)의 주요 사업안은 다음과 같음.

-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다중이 모이거나 대면하는 사업이 축소된 바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 장독대 운영”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었음.

**<표> 세부사업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연번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A)	기정 예산 (B)	제1회 추가경정예산 (C)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D)	추경 예산(안) (E=B+C+D)	(19대비) 증감률 (E/A)	본예산 대비 증감 (E/B)
	식품정책과	10,861	12,324	-	△215	12,109	11.5	△1.7
1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4,940	5,995	-	△72	5,924	19.9	△1.2
2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 장독대 운영	350	350	-	△143	207	△40.9	△40.9

**(4) 질병관리과**

○ 대상사업은 총 1건 모두 감액사업으로 △ 28백만원으로 추경(안)의 주요사업안은 다음과 같음.

-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의 경우는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한 감추경임.

**<표> 세부사업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연번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A)	기정 예산 (B)	제1회 추가경정예산 (C)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D)	추경 예산(안) (E=B+C+D)	(19대비) 증감률 (E/A)	본예산 대비 증감 (E/B)
	질병관리과	127,965	121,153	-	△28	121,125	△5.3	0.0
1	에이즈예방 홍보 및 교육 사업	388	500	-	△28	472	21.6	△5.6

(5) 동물보호과

- 대상사업은 총 6건 모두 감액사업으로 △ 274백만원으로 추경(안)의 주요사업안은 다음과 같음.
- 동물관련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로 인해 반려동물 교육이나 길고양이 등 관련 사업의 인건비 및 사업비 감액안이 제출되었음.

<표> 세부사업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연번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A)	기정 예산 (B)	제1회 추가경정예산 (C)	제2회 추가경정예산 (D)	추경 예산(안) (E=B+C+D)	(19대비) 증감률 (E/A)	본예산 대비 증감 (E/B)
	동물보호과	6,512	6,138	-	△274	5,865	△10.0	△4.5
1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	132	162	-	△20	142	7.6	△12.4
2	동물복지 활동 지원	50	45	-	△7	38	△24.0	△15.6
3	동물복지지원 센터 운영	407	457	-	△6	451	10.8	△1.3
4	서울반려동물 교육센터 운영	219	219	-	△29	191	△12.8	△13.0
5	반려견 놀이터 조성(전환)	500	300	-	△200	100	△80.0	△66.7
6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	0	290	-	△12	278	신규	△4.1

(6) 보건환경연구원

- 대상사업은 총 1건 모두 감액사업으로 △ 1억 97백만원으로 추경(안)의 주요

사업안은 다음과 같음.

<표> 세부사업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연 번	세부사업 명	2019년 예산 (A)	기정예 산 (B)	제1회 추가경 정예산 (C)	제2회 추가경 정예산 안(D)	추경 예산(안) (E=B+C+D)	(19대비) 증감률 (E/A)	본예산 대비 증감 (E/B)
	보건환경연구원	15,585	21,597	-	△ 197	21,400	37.3	△ 0.9
1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0	8,206	-	△ 197	8,008	신규	△ 2.4

### 3 추경안 검토의견

#### 가. 여성가족정책실

##### 1. 추경안 유형별 검토

##### 1) 국비내시 변경

##### (1) 성평등 청년 네트워크 지원사업

- ‘성평등 청년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2030청년층이 분석하는 성별갈등의 원인과 성평등한 연대문화 조성을 위한 연속 좌담회 및 SNS를 활용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2020년 신규로 편성된 국비매칭 사업임.
- `20년도 동 사업의 기정예산은 3,570만원으로, 추경안은 여성가족부 가내시 이후, 확정내시에서 서울특별시가 제외됨에 따라 국비 2,500만원에 매칭 시비분 1,07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이 감액(100% 감소)되어 미추진 될 예정임.

### <표> 성평등 청년 네트워크 지원사업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0	(x25,000) 35,700	(x-25,000) -35,700	
민간경상사업보조	(x-) 0	(x25,000) 35,700	(x-25,000) -35,700	◦ 성평등 청년 네트워크 지원 △ 35,700,000

- 이러한 추경 편성이 이루어지는 근본적 원인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대부분의 국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방식 때문이라고 하겠음.
- 그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운영되기 보다는 중앙부처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추어서 수동적 자세로 업무를 집행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체계적인 낭비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음.
- 이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관위임한 사무 및 단체위임한 사무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로 재배분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 사업계획 축소 등 불용예산 대상 사업에 대한 감액

### (1)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 동 사업은 가정양육 부모의 고립 육아 해소 및 마을 내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육아 커뮤니티 공간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년도 동 사업의 기정예산은 55억 9백만원으로, 금번 추경안은 열린육아방 설치 수요 감소에 따른 리모델링비용 14억원을 감액(25.4% 감소)한 41억 962만원이 편성됨.

**<표>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364,728) 4,109,616	(x364,728) 5,509,616	(x-) -1,400,000	
사무관리비	(x-) 11,650	(x-) 11,650	(x-) 0	
민간경상사업보조	(x-) 382,000	(x-) 382,000	(x-)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364,728) 2,315,966	(x364,728) 2,315,966	(x-) 0	
자치단체자본보조	(x-) 1,400,000	(x-) 2,800,000	(x-) -1,400,000	○ 열린육아방 리모델링비 △ 35개소×40천원 = △ 1,400,000천원

- 구체적인 감액 사유는, 시비 100%로 지원되는 열린육아방 리모델링비 물량을 2020년 본예산에 70개소, 2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유행하던 시기인 2월 하반기에 실시한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31~32개소로 나타난 바, 사업추진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 개소수를 줄여 예산을 감액한 것임.

<표> 2020년 열린 육아방 자치구별 수요조사 결과

(단위 : 개소)

연번	자치구	열린 육아방 개소 수*	2020년도 신규설치(확정) 개소 수**	2020년도 신규 리모델링 신청 개소 수***	
				개소	설치 시기
	전체	48	8	31~32	
1	종로구	1	0	0	-
2	중구	2	0	1	2020년 상반기
3	용산구	0	0	0	-
4	성동구	0	0	1	2020년 6~7월
5	광진구	0	0	2	2020년 5~11월
6	동대문	2	0	4	2020년 하반기
7	중랑구	10	0	3	2020년 하반기
8	성북구	2	0	0	-
9	강북구	1	0	1	2020년 하반기(예정)
10	도봉구	0	0	1	2020년 5월
11	노원구	5	0	4	2020년 5~10월
12	은평구	1	0	2	2020년 5~9월
13	서대문구	2	0	0	-
14	마포구	1	0	0	-
15	양천구	4	1	1	2020년 12월 개관
16	강서구	0	1	1	2020년 9월
17	구로구	0	0	0	-
18	금천구	0	0	2	2020년 상반기
19	영등포구	5	0	1	2020년 11월(예정)
20	동작구	3	1	1	2021년 5월
21	관악구	1	1	1	2020년 하반기
22	서초구	2	0	1~2	2020년 하반기
23	강남구	2	0	2	2020년 상반기
24	송파구	3	1	1	미정
25	강동구	1	3	1	2020년 하반기(예정)

\* 열린 육아방 개소 수는 2020년 2월 기준

\*\* 2020년도 신규설치 개소 수는 2019년도에 리모델링비 지원 선정되어 설치확정된 곳임, 단 송파구의 경우, 2019년 선

정되어 사업대상지까지 확보되었으나 주민반대로 현재 미정임.

\*\*\* 2020년도 신규 리모델링 신청 수요조사는 2020년 2월 18~27일 사이에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었음.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종사자 및 이용아동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휴원 및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이용시설의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음.
- 금번 추경예산안 중 아래의 16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물량 축소, 집행잔액 발생, 국외출장 제한, 행사 취소 등의 사유로 일부 예산 사업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불용액을 감액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 수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표> 사업계획 축소 등 불용예상 대상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기정예산 (A)	감액 (B)	추경 예산(안) (A-B)	감액 사유 및 향후계획
1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 - 여성공예 분야에 특화한 체계적인 창업 지원 및 시민참여를 통한 공예문화 활성화	2,223	70	2,153	<b>&lt;감액사유&gt;</b> - 코로나19로 인한 미개방 및 사업 축소로 인한 불용예상금액 감추경 · 공예혁신지원사업, 지역재생사업 등 축소
2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 직장맘 3고충 해소 등으로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 보호 지원	1,788	46	1,742	<b>&lt;감액사유&gt;</b> - 민간위탁 계약심사 삭감액에 대하여 감추경 - 동부권 24백만원, 서남권 17백만원, 서북권 5백만원



연 번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기정예산 (A)	감액 (B)	추경 예산(안) (A-B)	감액 사유 및 향후계획
3	안심귀가스카우트 - 여성 및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 등 심야 귀갓길 지원 (스카우트 500명)	5,741	50	5,691	〈감액사유〉 - 안심귀가스카우트 중도퇴직으로 재채용까지 공백발생분에 대하여 불용예상액 감액
4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 여성·보육정책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평가, 국외출장 추진 등	192	30	162	〈감액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제한에 따라서 미사용액 감추경 - 총 40백만원중 30백만원 감액
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생활비, 진료비, 사망조의금)	95	20	75	〈감액사유〉 - 대상자 감소로 인한 예상 집행잔액 및 전년도 집행잔액 감안하여 불용예상액 감추경 ※ 대구시 전출(1명) 사망(1명)으로 대상자 감소(17→15)
6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안심이앱 운영, 안심택배 운영, 디지털성범죄 예방, 여성안심마을 운영 등 여성안심 생활환경 조성	3,126	53	3,074	〈감액사유〉 - 여성안심택배 용역 낙찰차액 감추경 ※ 발주액 449,550천원, 계약액 397,000천원, 낙찰차액 52,550천원
7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 성매매피해자 등 관련시설(24개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1,759) 7,031	100	(×1,759) 6,931	〈감액사유〉 - 코로나19에 인한 시설 운영 제한으로 종사자들의 연가 사용 증가 및 시간외근무 감소로 인한 불용예상액, 일부 종사자 이직에 따라 공석발생으로 인한 불용 감액

연 번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기정예산 (A)	감액 (B)	추경 예산(안) (A-B)	감액 사유 및 향후계획
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확충을 통한 공보육 강화	(×9,950) 80,000	(×-) 5,000	(×9,950) 75,000	<p>&lt;감액사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관련 긴급대책 재원마련을 위하여 설치비 일부 감액조정</li> </ul> <p>&lt;향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11 :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선정(수시)</li> <li>- 사업비 교부(시→자치구)</li> </ul>
9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 자연과 연계, 어린이 놀이문화를 주도하는 혁신형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1,708	1,489	219	<p>&lt;감액사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부터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행정절차기간 추가소요로 설계비 등 감추경 후 '21년 예산편성하여 설계발주 추진 예정</li> </ul> <p>&lt;향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7.~9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li> <li>- '20.9 : 공공건축심의</li> <li>- '20.12. : 설계공모</li> </ul>
10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가족교육, 가족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치구 센터 역량 강화 등 가족관계 증진 사업	1,392	60	1,332	<p>&lt;감액사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에 따른 건가센터 휴관으로 일부 사업비 감액(10%)</li> <li>· 가정의달 행사폐지, 자치구센터 실무자 교육/간담회 축소</li> </ul>
11	가족학교 운영지원 - 1자치구 1가족학교를 통한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유형별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280	35	1,245	<p>&lt;감액사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에 따른 건가센터 휴관으로 일부 사업비 감액(10%)</li> <li>· 예비·신혼부부교실, 부모교실(아동·청소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등 미운영</li> </ul>

연 번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기정예산 (A)	감액 (B)	추경 예산(안) (A-B)	감액 사유 및 향후계획
12	출생축하용품 지원 - 모든 출생가정에 출생축하용품 지원	4,674	400	4,274	<p>&lt;감액사유&gt; - 출생율 추계상 서울시 출생아 수가 예상보다 1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률 감안하여 감추경</p> <p>&lt;향후계획&gt; - 출생축하용품 지원 : 60,600명</p>
13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3,495	340	3,155	<p>&lt;감액사유&gt; - 지원 아동 감소 및 집행률을 감안하여 사업비 10% 감액</p> <p>&lt;향후계획&gt; - 보호아동 873명(소년소녀가정 2명, 가정위탁아동 871명) 지원</p>
14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x119) 2,892	(x-) 437	(x119) 2,455	<p>&lt;감액사유&gt; - (기존 센터) '19년 확충 물량 감소 자연에 따른 '20년 1-2분기 운영비 감액 - (신규 센터) 물량 조정(일반 74, 융합 16)에 따른 운영비 감액 - (집중지원구) 인력지원 지원기간 감소(6개월→3개월)에 따른 운영비 감액</p>
15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x1,734) 18,672	(x-) 3,644	(x1,734) 14,728	<p>&lt;감액사유&gt; - (기존 센터) '19년 확충 물량 감소 자연에 따른 '20년 1-2분기 인건비 감액 - (신규 센터) 물량 조정(일반 74, 융합 16)에 따른 인건비 감액</p>
16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 사업내용 : 열린 공공놀이방, 공동 육아 품앗이 공간, 부모 자조모임 지원 등	(x365) 5,510	(x-) 1,400	(x365) 4,110	<p>&lt;감액사유&gt; - 코로나19로 자치구의 공간발굴활동에 제한이 있어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30개 전후로 파악됨 - 부모와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방향과 맞지 않으며,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에 비해 시급성이 떨어져 확충규모 조정</p>

### 3) 미추진 사업

#### (1) 세계인의날 행사 운영

- 동 사업은 세계인의 날(5.20)을 맞이하여 세계인의 날 전후 일주일을 글로벌 문화주간으로 하여 내·외국인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소통 기회 제공하려는 내용임.
- 금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행사를 취소하고 감액하려는 것으로, '20년도 기정예산액은 1천 6백 5십만 원이며, 금번 추경안은 전액 감액(100% 감소)되어 미추진 될 예정임.

**<표> 세계인의 날 행사 운영**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0	(x-) 16,500	(x-) -16,500	
행사운영비	(x-) 0	(x-) 16,500	(x-) -16,500	○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 16,500,000원

## 2. 추경안 세부사업 검토

###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 동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대책 재원마련을 위해 감액하려는 것으로, '20년도 기정예산액은 800억원이며, 금번 추경안은 50억원을 감액(6.3% 감소)한 750억원이 편성됨.

### <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9,950,000) 75,000,000	(x9,950,000) 80,000,000	(x-) -5,000,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x9,950,000) 75,000,000	(x9,950,000) 80,000,000	(x-) -5,000,000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5,000,000,000 = 5개소×1,000,000천원

○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5년 이후 1,080개소 확충하여 1차 국공립 어린이집 1000+목표를 2018년에 달성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그 목표를 개소 수에서 이용률로 변경하여 2021년까지 이용률 50%를 달성을 계획하였는데, 2019년말기준 이용률은 39.3%로 나타남(-민선7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조기 달성을 위한-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보육담당관-1932, 2020.1.30.).

※ 2019년 확충 계획에는 2022년까지 50%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9년 9월경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시장공약사업으로 2021년 이용률 50% 조기달성을 위해 계획이 변경되었음.

### <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실적

연 도 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 용 률	26%	28%	31%	35%	39.3%
국공립 승인 (운영 수)	163개소 (922개소)	302개소 (1,071개소)	272개소 (1,274개소)	240개소 (1,481개소)	103개소 (1,661개소)

- 한편 집행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2020년 당초예산 800억(80개소)에 추경으로 480억원 추가편성하여 130개소 확충하려고 하였으나, 금번 감추경으로 확충 목표가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서울시의 영유아 인구 급감(매년 4~5%) 등으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육서비스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임.

## 2)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 동 추경안은 2019년 12월 19일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물 건립시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가 의무화되어, 설계 발주 일정의 지연으로 인해 이월이 예상되는 설계비 등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20년도 기정예산액은 17억 8백만원이며, 추경안은 설계비 등의 14억 8천9백만 원을 감액(0.8% 감소)한 2억 1천 9백만원이 편성됨.

**<표>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219,248	(x-) 1,708,248	(x-) -1,489,000	
사무관리비	(x-) 39,248	(x-) 39,248	(x-) 0	
연구용역비	(x-) 150,000	(x-) 150,000	(x-) 0	
시설비	(x-) 30,000	(x-) 1,519,000	(x-) -1,48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비 등 △1,389,000천원</li> <li>◦ 설계보상비 △100,000천원</li> </ul>

- 동 사업은 영유아·어린이 대상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숲과 연계하여 어린이 놀이문화를 주도하는 혁신형 어린이복합 문화시설 서울혁신파크 내(은평구 통일로 684)에 건립하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음.

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혁신파크 內(은평구 통일로 684일대 109,727㎡)
○ 면	적 : 3,976㎡(건축부지 3,596㎡, 놀이숲부지 380㎡)
○ 건축규모	: 지상3층/지하2층(연면적 5,658㎡)
○ 사업기간	: 2015~2024
○ 사업비	: 264억원(※ 용지비 197억원 별도)
○ 사업내용	: 영유아·어린이 대상 전시·체험·놀이공간 조성
○ 공간구성	: 프로젝트 실험실1,2,3, 활짝광장, 숲의 관문, 놀이숲 5개 체험영역, 편의시설 등

- 금번 추정 사유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의2<sup>12)</sup>의 개

1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그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2.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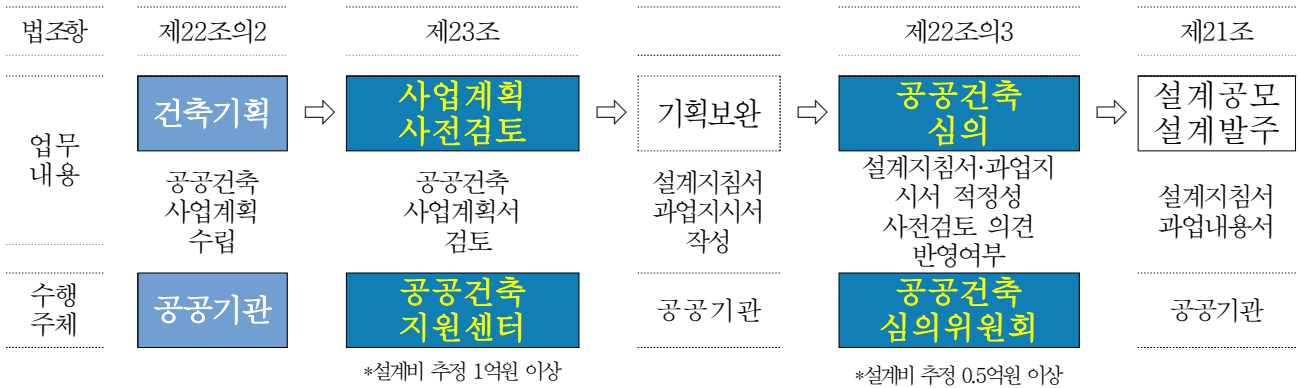
정에 따라 '20년 1월 16일부터 공공기관은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상관없이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 전에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지침서나 과업지시서 작성 등의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는 설계비가 11억 9,100만원(총공사비 약 229억원\*5.19%)인 동 어 린이복합문화시설은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공공건축 사업은 법 제23조13)에 따라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또한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으로 공공건축 사업은 법 제22조의214) 및 시행령 제19조의215)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시행령 제

- 
- 13)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삭제 <2018. 12. 18.>
  -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8.>
    - 1. ~ 5. 삭제 <2018. 12. 18.>
    -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 ④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사업예산, 건축물등의 입지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 ⑤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 ⑥ 제5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설계용역 발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검토·재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 14) 앞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참조
  - 1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주변 유사시설·유희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 2.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 3.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 4.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 5.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 6.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본구상 및 공사수행방식의 결정을 말한다.
  - ③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 2.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④ 법 제2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 2.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 [본조신설 2019. 12. 17.]



19조의4(16)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받아야 함.



<그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공공건축사업 추진절차

- 이에 따라 사업계획사전 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등의 신규절차가 4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2020년 8~11월에 추진할 예정이었던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 설계가 2021년으로 미루어져 예산의 이월이 예상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 14억 8,9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그 추정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의 경우, 관련한 절차와 규정이 개별 상위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바, 향후 해당 절차나

1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9조의4(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17.]

규정이 누락되어 공기가 늦춰지는 등의 사유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됨.

### 3)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 동 추경안은 코로나 19장기화에 따른 민생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형과 융합형 키움센터 운영비의 일부를 감액하려는 것으로, '20년도 기정예산액은 28억 9,175만원이며, 금번 추경안은 4억 3,705만원을 감액(15.1% 감소)한 24억 5,470만원이 편성됨.

<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118,800) 2,454,701	(x118,800) 2,891,751	(x-) -437,050	
사무관리비	(x-) 1,034,000	(x-) 1,034,000	(x-)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7,000	(x-) 7,000	(x-) 0	
전산개발비	(x-) 179,631	(x-) 179,631	(x-)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118,800) 1,234,070	(x118,800) 1,671,120	(x-) -437,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센터) '19년 확충 물량 감소 지연에 따른 '20년 1-2분기 운영비 감액</li> <li>◦ (신규 센터) 물량 조정(일반 74, 융합 16)에 따른 운영비 감액</li> <li>◦ 집중지원구(5개구)에 대한 인력지원(구별 1인) 일정 연기(7월→12월)</li> </ul>

- 금번 추경안에는 운영비외에 인건비가 편성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예산 역시 36억 4,406만원의 감액안이 계상되었으며, 확충시기 조절  
 와 설치 물량 조정을 통해 총 40억 8,111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일반형 및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인건비 감액안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조정 내역	산출내역	감추경 가능액
세부 사업	예산	계		4,081,106
소계				437,050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운영비	1분기 미지원(일반7, 융합8)	(700천원×3월×7개소)+ (1,400천원×3월×8개소)	48,300
		2분기 미지원(일반1, 융합8)	(700천원×3월×1개소)+ (1,400천원×3월×8개소)	35,700
		신규센터 미설치(일반14) ※ 일반 12 → 융합 6 전환	(700천원×4월×14개소)	39,200
		개소 연기(일반74, 융합16) ※ 지원기간 4개월 → 2개월	(700천원×2월×74개소)+ (1,400천원×2월×16개소)	148,400
	급식비	1-2분기 미지원(융합 8)	(1,950천원×5월×8개소) +(3,900천원×1월×8개소)	109,200
집중지원구 인력지원	지원일정 연기(7월→12월) ※ 지원기간 6개월 → 1개월	2,250천원×5월×5명	56,250 (기 감액)	
소계				3,644,056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인건비	1분기 미지원(일반7, 융합8)	(9,602천원×3월×7개소)+ (18,185천원×3월×8개소)	638,082
		2분기 미지원(일반1, 융합8)	(9,602천원×3월×1개소)+ (18,185천원×3월×8개소)	465,246
		신규센터 미설치(일반14) ※ 일반 12 → 융합 6 전환	(9,602천원×4월×14개소)	537,712
		개소 연기(일반74, 융합16) ※ 지원기간 4개월 → 2개월	(9,602천원×2월×74개소)+ (18,185천원×2월×16개소)	2,003,016

○ 한편 운영비와 별개로 설치 개소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120개→90개) 키

움센터 설치 사업 예산은 감액되지 않았는데, 집행부에 따르면 일반형의 경우, '20년 예산 편성 당시 면적 기준(111 $m^2$ )보다 실제 선정되거나 신청된 센터의 면적(1차 선정 8개소 평균 149 $m^2$ )이 확대되었고, 융합형은 당초 목표인 10개소보다 신청이 6개소 늘어나 필요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임.

**<표> 키움센터 유형별 계획대비 선정 및 설치 현황**

연도		계획	선정	설치완료
2018	일반	4	4	4
2019	일반	77	94	68
	융합	17	8	1
2020	일반	100	74	0
	융합	10	16	0

※ 2020년도 '선정' 개소수의 경우, 감추경 시 개소수 조정을 반영한 수치임

- 한편 2019년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부진으로 인해, 2020년에는 집중지원 구 선정·추진 및 아이돌봄담당관 인력 총원 및 조직확대<sup>17)</sup> 등 예산 및 인력, 정책 차원의 지원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로 인해 키움센터 신규설치 물량을 당초 계획 110개소 대비 10개소가 늘어난 120개소를 기확정하는 등 상반기 임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확충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아이돌봄 담당관-4691, 2020.3.23.).
- 따라서 감추경을 통해 설치 물량(당초 120개→ 추경안 90개(일반74, 융합16))을 일

17) 2020년 1월자로 기존 4개팀에서 5개팀으로 확대하였으며, 2020년 4월자로 1반 7팀으로 8명을 추가 증원하였음.

방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일부 임차 계약을 맺거나 홍보(플랜카드, 지역신문 등)를 통해 시민에게 공지된 사항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정책실행도 훼손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표>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계획

<b>목표 (누계)</b>	( '18 ) 4개	→	( '19 ) 102개	→	( '20 ) 212개	→	( '21 ) 375개			
	(국시비 매칭, 3:7)		(전액 시비투자, 서울형 모델)							
	<b>일반형 키움센터</b>	<b>융합형 키움센터</b>	<b>거점형 키움센터</b>							
<b>기능 및 역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li> <li>· 틈새돌봄 수요와 접근성 중시</li> <li>· 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과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권역별 돌봄거점 역할 수행</li> <li>· 지역아동센터와 협업상생모델</li> <li>· 긴급·주말돌봄 강화, 급식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대표 특화 돌봄 서비스 제공</li> <li>· 문화·예술·체육, 부모교육 강화</li> <li>· 일반형·융합형 운영 보완지원</li> </ul>							
<b>면적</b>	66㎡ 이상 (小규모, 구립)	210㎡ 이상 (中규모, 구립)	1,000㎡ 이상 (大규모, 시립)							
<b>투자규모</b>	1,365억원			431억원			1,246억원			
<b>연차별 소요예산</b>	'19	'20	'21	'19	'20	'21	'19	'20	'21	'22
	141억	428억	796억	125억	116억	190억	35억	83억	464억	664억

### 3. 2019년 불용사업(불용액 20% 이상)

○ 2019년 불용률 20% 이상 사업 총 11건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가)	지출액 (나)	보조금 반납금 (라)	불용		
						불용액 (마)	불용률 (마)/(가)	사유
1	여성정책 담당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100,000	78,853	-	21,147	21.1%	대상자 1명 사망, 1명 전출 등의 사유로 집행금 잔액 발생

2	여성정책 담당관	기본경비	251,214	185,423	-	65,791	26.2%	여비집행잔액이 65,749천원으로, 여비집행사유 미발생(국내 관내 및 관외출장)
3	가족담당관	광진구 가족센터 건립	5,000,000	2,496,000	-	2,504,000	50.1%	중앙부처 변경내시 변경으로 차액 미교부 [5,000백만원 → 2,496백만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3994(2019.12.27.)]
4	가족담당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72,150	40,387	4,507	27,257	37.8%	지원아동수 감소('18년 790명 → '19년 631명)에 따른 집행잔액 및 용역계약 낙찰차액(628,440원) 발생 19.09.04.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72,150천원 → 49,400천원)에 따른 시비 불용 발생
5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054,192	602,500	156,359	295,333	28.0%	국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2019년 상반기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추진실적 부진에 따른 국비 보조금 감액 → 시비 부담분 발생(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3158(2019.8.20.))
6	아이돌봄담당관	다함께 돌봄(우리 동네 키움센터 운영)	6,849,799	3,337,319	246,029	3,266,451	47.7%	개소 지연으로 인한 운영보조금(인건비, 운영비) 집행률 저조
7	아이돌봄담당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8,455,660	6,416,721	-	2,038,939	24.1%	지역아동센터와 협의 지연, 지역아동센터의 구립전환 수요 부족 등에 따라 융합형 키움센터 설치·운영 예산 불용

8	아이 돌봄담당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954,134	606,904	101,618	245,612	25.7%	평가방식 반발 시설의 보조금 미신청
9	아이 돌봄담당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345,166	95,200	5,570	244,396	70.8%	국비확정내시액 감소(345백만원→114백만원) 및 국비교부지연
10	아이 돌봄담당관	국고보조금 반환	1,936,574	650,502	-	1,286,072	66.4%	아이돌봄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발급고지서 발급 지연 등
11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국고보조금 반환	4,660	1,710	-	2,950	63.3%	여성가족부 고지서 미발급으로 인한 미반납

## 나. 복지정책실

### 1. 추경안 유형별 검토

#### 1) 국비내시 변경

- 복지정책실은 국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5건의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제출되었음. 이 중 1건은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 74억원이 증액된 것이고, 나머지 4건은 국비 변경에 따라 감액 제출되었음(67억원).<sup>18)</sup>

<sup>18)</sup>분류는 복지정책실 전문위원실 보고 기준 (\*20.05.01)

**<표> 복지정책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추경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2019예산	2020년도		증감액
			추경예산	기정예산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	15,800	16,100	(x△100) △300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178,600	171,200	(x7,400) 7,400
장애인자립지원 과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x512)	(x2,220)	(x3,030)	(x△810)
		512	4,440	6,060	△1,620
자활지원과	자활근로사업지원	(x58,536)	(x73,965)	(x74,701)	(x△735)
		84,692	108,483	109,561	△1,078
	자활장려금	(x4,538) 6,660	(x750) 1,250	(x3,366) 4,936	(x△2,616) △3,686

**(1) 증액사업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 복지정책실에서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은 총 5건으로 1건의 증액사업과 4건의 감액사업임.
- 증액사업은 총 1건, 74억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악화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약 27만 가구)을 대상으로 4개월 분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100% 국비 사업으로, 4.15일 기준으로 전체 대상의 70.2%(19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이 완료됨.
- 이번 국비증액은 사업설계 초기 보건복지부의 추계인원보다 실제 대상이 늘어난 것과 신규 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대상자의 확대가 주요 원인임.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27만 여 가구
- 지원기간 : 4월 ~ 7월(4개월)
-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소비쿠폰(충전식 선불카드) 차등 지급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시설	1인 520,000					
주거·교육·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 지원방법 : 대상자에 지급 안내 및 인원·장소(주민센터·복지관 등) 분산 지급
- 소비쿠폰 지급 실시 : 4.6.(월) ~

(2) 감액사업 : 저소득층 미세면지 마스크 사업 외 3건

- 국비내시와 관련되어 감액되는 사업은 ‘저소득층 미세면지 마스크’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40만 여명을 대상으로 미세면지 마스크를 공급하려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시비 편성 초과분 3억원을 감추경하였음.
-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공급은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을 통해서 이뤄지며, 이 외에도 집단감염 고위험직업군(버스·택시기사, 이동노동자, 콜센터 근로자, 대형종합소매업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는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을 활용해 이뤄지고 있음.
-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일정요건을 가진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시비편성 초과분 16억원을 감추경 하였음.

- 자활지원과에서는 총 2건의 사업에서 48억 원을 감액하였음.
  - 저소득층에게 노동능력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단 내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사업지원 사업에서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11억원을 감액하였음.
  -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추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자활 장려금 사업에서 국비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액이 감소하면서 37억 원의 감액을 실시하였음.

## 2) 사업계획 축소

- 복지정책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지연, 집행률 추이 등을 고려한 불용예 상액 등에 따른 감액사업은 총 20건, 637억 원이며 각 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에서는 총 7건의 사업, 430억 7천 3백만원에 대해 감액을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훈대상자 등 지원사업에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등 집행률 추이를 고려하여 불용예상액 5억원을 감액함.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채용 및 사업시행 지연으로 기존 및 신규 종합재가센터의 신규채용 인건비 및 사업비의 50%인 35억원을 감액하였음.

-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채용 연기 및 사업추진 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불용예상액과 내부유보금 14억원을 감액하였음 .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수요감소를 고려해 국외 여비 4천만원을 감액하였음.
- 의료급여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병원진료 감소추이를 고려하여 불용예상액 175억원에 대한 감액을 실시하였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병원진료 감소추이를 고려하여 의료급여사업 시비매칭을 위한 전출금 불용예상액 200억원을 감액하였음.
- 그 외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2018년 사회복지제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 중 자치구 반납분 1억원에 대해 감액을 실시함.

## (2) 지역복지돌봄과

- 지역복지돌봄과에서는 총 1건의 사업, 22억원에 대해 감액을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울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채용 및 사업시행 지연으로 2단계 사업추진 8개구의 신규채용 인건비 50%, 사업비 12%에 달하는 22억원을 감액함.

## (3)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총 3건의 사업, 96억원에 대해 감액을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에서 마포실버케어센터 사고이월예정액 41억원을 감액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함.
-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에서 부족한 자치구 데이케어센터 설치수요를 반영해 9억원 감액을 실시함.
-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에서 국토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연내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사비 46억원을 감액함.

#### (4) 인생이모작지원과

-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는 총 5건의 사업, 38억원에 대해 감액을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람일자리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사업 추진이 일부 보류되면서 불용예상액 11억원을 감액함.
  -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3개 캠퍼스 휴관에 따른 사업비 불용예상액 14억원을 감액함.
  -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사업 추진이 일부 보류되면서 불용예상액 8억원을 감액함.
  -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에서 예산편성 대비 신청이 적은 것을 고려하여, 긴급기능보강을 위한 유보금을 제외한 불용예상액 3억원을 감액함.
  -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50+캠퍼스 확충사업의 설계공정이 지연되면서 이에 해당하는 2억원에 대한 감액을 실시함.

(5)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는 총 3건의 사업, 48억원에 대해 감액을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지원주택 운영에서 SH의 지원주택 공정지연으로 장애인지원주택 입주시기가 늦춰지면서 불용예상액 4억원을 감액함.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서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채용실적이 저조하여 처우개선비 불용예상액 7억원을 감액함.
-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인력채용기준으로는 교대인력 채용이 어려워 이에 따른 불용예상액 37억원을 감액함.

(6)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총 1건의 사업, 2억원에 대해 감액을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립강북장애인 복지관 별관 신축건립 사업에서 사고이월 예정금액인 2억원을 감액함.

<표> 복지정책실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추경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2019예산	2020년도		증감액
			추경예산	기정예산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등 지원	52,403	57,400	57,900	△ 500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x900) 8,371	(x-) 25,500	(x900) 29,000	△ 3,500

부서명	사업명	2019예산	2020년도		증감액
			추경예산	기정예산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32,359	37,200	38,600	△ 1,400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397	430	470	△ 40
	의료급여 사업	1,449,327	(x751,100) 1,480,200	(x751,100) 1,497,700	△ 17,5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768,572	722,300	742,300	△ 20,000
	국고보조금 반환	-	200	300	△ 100
지역돌봄 복지과	서울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3,066	10,300	12,500	△ 2,200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	14,710	16,300	20,400	△ 4,100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15,871	14,400	15,300	△ 900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700	100	4,700	△ 4,600
인생이모작 지원과	보람일자리 사업	10,916	9,800	10,900	△ 1,100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14,165	13,900	15,300	△ 1,400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직숙)	4,393	(x1,500) 4,800	(x1,800) 5,600	(x△ 300) △ 800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5,616	5,316	5,616	△ 300
	50+ 캠퍼스 확충	17,414	13,588	13,788	△ 200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지원주택운영	-	(x-) 2,656	(x-) 3,056	(x-) △ 400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00,095	(x43,673) 110,587	(x43,673) 111,287	(x-) △ 700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0	(x1,220) 2,440	(x3,050) 6,100	(x△ 1,830) △ 3,660
장애인자립 지원과	구립강북장애인 복지관 별관 신축건립	0	(x-) 664	(x-) 884	(x-) △ 220
자활지원과	자활근로사업지원	84,692	(x74,000) 108,483	(x74,700) 109,561	(x△ 700) △ 1,078
	자활장려금	6,660	(x800) 1,250	(x3,400) 4,936	(x△ 2,600) △ 3,686

## 2. 추경안 세부사업 검토

### 1) 의료급여사업·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 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동법 제25조에 근거해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의료수급권자는 1종(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등)과 2종(기초수급자 중 1종 이외의 자)으로 구분되며, 현재 서울시에는 2020년 3월 말 기준 25만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있음.
- 2018년 서울연구원의 연구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감소하는 반면, 서울시는 대상자와 진료비가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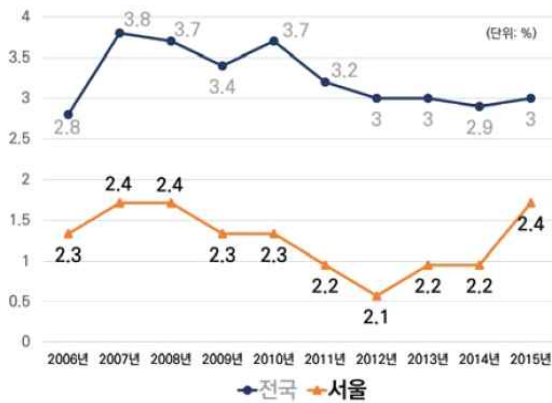


그림 1. 전국 및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 추이 (2006~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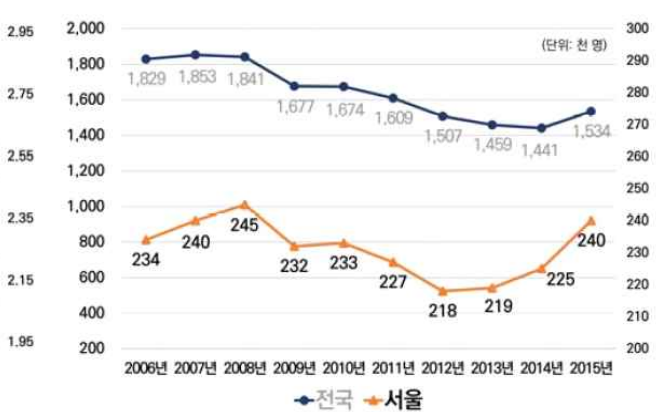


그림 2. 전국 및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추이 (2006~2015년)

출처: 손창우(2018),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이용실태, 서울연구원

- 또한 2019년 기준 24만명이었던 서울시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020년 3월

19) 손창우(2018),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이용실태, 정책리포트(253), 2108.6.1-23, 서울연구원

현재 25만명으로 1만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서울시의 의료급여 환자의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2008년 5,898억원에서 2012년 7,107억 원으로 20.5%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 대비 16.0%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sup>20)</sup>
- 2020년 예산편성에서 의료급여 경상보조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63억 (8.8%) 증가한 7조 37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의 단가 현실화에 따른 기본진료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 부양의무자 재산소득환산율 완화에 따른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에 의한 증액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것임.
- 또한, 메르스 유행이 있었던 2015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서는 의료급여 경상보조를 537억(1.2%) 증액한 바 있음. 이는 전년도 진료비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메르스로 인해 발생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경영수입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진료비를 적기에 지급하기 위함이었음.
  - 의료급여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미지급금을 다음연도에 연례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중앙정부의 경우 2013년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은 매년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있음.<sup>21)</sup>
- 당초 2020년 예산편성에서 의료급여 경상보조가 전년대비 8.8% 증액된 점,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2015년도 메르스 사태와 흡사한 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점 등 전년도에 비해 의료급여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 손창우(2018),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이용실태, *정책리포트(253)*, 2018.6.1-23, 서울연구원

21) 국회예산정책처(2019),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국회예산정책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오히려 의료급여사업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 출금에 감추경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이 구분되어 사회보장 내에서 의료보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 2001년 「의료보호법」이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의료보호대상자'였던 사람들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변경되어 의료부조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음.<sup>22)</sup>
- 의료급여재원은 일부 본인부담금 외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로 충당되는데,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은 50%, 기타 지역은 80%를 적용하고, 지방비출연금 역시 서울은 50%, 기타 지역은 20%를 부담함으로써 서울시는 의료급여기금 부담을 타 시·도보다 많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재원이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음.<sup>23)</sup>
- 집행부는 이번 의료급여 관련 감추경에 있어 필요시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나, 의료급여가 충분하지 않을 시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고 영세 의료기관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sup>24)</sup> 정부 추경에서도 아직 의료급여 경상보조금에 대한 감액이 이뤄지지 않은 점, 매년 불용률이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삭감금액의 적정성, 규모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2) 보건복지부(2018), 한국 의료급여 40년사, 보건복지부.

23) 이용재 외(2014), 서울시 의료급여 재정효율화 정책제안 연구, 서울시.

24) 국회예산정책처(2019),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국회예산정책처.

<표> 최근 3년간 의료급여사업·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명	2017년			2018년			2019년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의료급여 사업	1,067,627,903	8,837,758	0.8%	1,184,029,274	90,374	0.0%	1,449,326,662	4,660,356	0.3%
의료급여 기금특별 회계전출금	532,800,394	3,359,900	0.6%	768,571,948	424,183	0.1%	768,571,948	424,183	0.1%

2) 돌봄 SOS센터 사업

- 돌봄 SOS센터 사업은 시민이 중심인 돌봄 체계로의 혁신을 통해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SOS센터’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돌봄부담이 제로(Zero)인 서울 구현을 목적으로 당초 전년보다 325% 증액된 130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최종 조정을 거쳐 125억 3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 금년도에는 전년도 5개 자치구에서 진행되었던 ‘돌봄 SOS센터’ 시범사업을 8개 자치구를 추가 선정해 총 13개 자치구에서 확대시행하게 됨.

▶'19년 시행 5개구 : 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구

▶'20년 시행 8개구 : 광진, 중랑, 도봉, 서대문, 양천, 영등포, 송파, 강동구

- 이번 추경안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22억 4천 4백만원을 감액함.
  - 감액 내용은 인력채용 지연으로 인해 2단계 사업추진 8개 자치구 신규채용인

력이 본래 3월 시험, 7월 배치 예정이었으나 각각 6월 시험, 10월 배치로 연기되면서 인건비 19억 9천 4백만원 (50%)를 절감함.

- 또한 사업지역이 예상되면서 서비스 지원 사업비 250백만원(12%)를 절감함.

○ 돌봄 SOS센터의 금년도 목표 채용인원은 총 338명(복지직 173명, 간호직 165명) 으로, 인건비와 관련해 125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표> 돌봄 SOS센터 중장기 인력채용 목표**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각 시행구 별 전 동 인력배치 시	846명	5개 구 90명	13개 구 338명	25개 구 418명

**<표> 돌봄 SOS센터 사업 소요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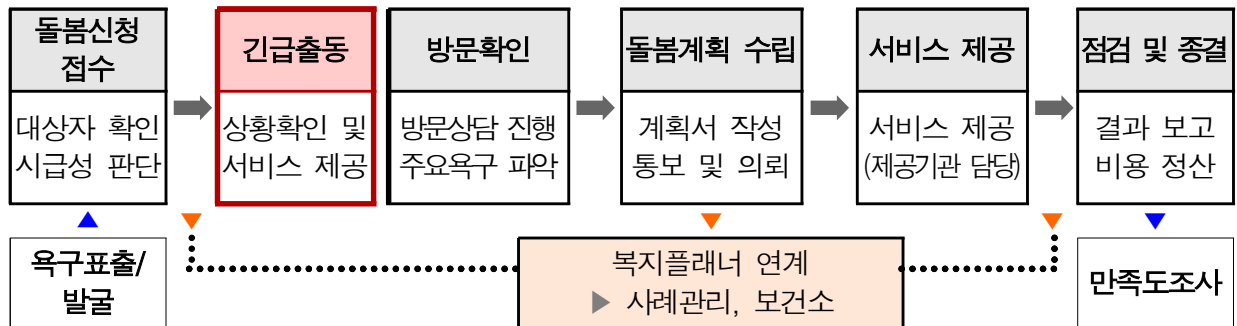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지역	5개 구	13개 구	25개 구	25개 구	
	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계	82,661	3,066	12,536	29,277	37,782	
1	돌봄매니저 인건비	42,195	1,063	6,114	15,040	19,978
2	돌봄SOS센터 사업비	38,087	1,748	5,585	13,280	17,474
3	공간개선비	1,269	135	507	627	-
4	사무관리비	1,110	120	330	330	330

○ 돌봄 SOS센터 사업에서 목표하는 인력채용이 이뤄진다면 2022년 이후 돌봄

매니저 인건비만 약 2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복지직 공무원 수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찾동 시행 후 1개 동주민센터 당 5.65명의 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sup>25)</sup>



[그림] 돌봄 SOS 센터 서비스 제공 절차

- 이미 서울시에서는 찾동사업을 통해 인력충원을 대폭 실시했지만, 인력충원을 통해 투입된 인력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철학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
- 찾동을 통해 선발된 복지플래너로 인해 발굴되는 사례는 많았지만 막상 방문하여 제공할 서비스 또는 급여가 없는 현실 상황 등 찾동으로 동단위 현장 인력에게 새롭게 부여된 과업들이 모호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함.
- 이처럼 찾동을 통해 지적된 인력충원으로 달성해야 할 상위 가치가 모호하고, 세부 과업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한 문제는 돌봄 SOS센터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sup>26)</sup>
- 금번 사업 지연을 계기로 하반기에 투입될 돌봄매니저 인력의 세부과업과 사업

25) 김정현 외(2017), 서울형 공공복지 전달체계 연구. 서울:서울시복지재단

26) 김정현 외(2017), 서울형 공공복지 전달체계 연구. 서울:서울시복지재단

전체의 목표에 대한 촘촘한 설계가 동반되어야 할 것임.

###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sup>27)</sup>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52시간 근무제 준수를 위하여 종사자수 5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에 교대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내용으로 20년 대상시설<sup>28)</sup>은 8개소, 채용목표인원은 125명임.

####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총원〉

- 지원목적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50인 이상 사업장) 준수
- 지원대상 : 종사자 5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8개소)
- 지원기준 : 2호봉 이내 신규 채용된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출처 :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

- '20년 본예산에는 68억 7656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애인거주시설<sup>29)</sup>내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등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700백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3,660백만원 등 총 △4,360백만원의 감액안이 제출되었음.

27) 장애인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1항 1호)

28) 1. 주52시간 근무제 규모별 적용시기

종사자 수	300인 이상	50인~300인 미만	5인~50인미만
적용시기	2018.7.1.~	2020.1.1.~	2021.7.1.~

출처:고용노동부

2.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수에 따른 개소수

종사자수	80인이상	70인이상	60인이상	50인이상	40인이상	40인 미만
45개소	4	1	1	2	8	29
	8개소					

출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표>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채용 관련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본 예산	2020년 제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장애인거주시설운영	(x43,673) 111,287	(x43,673) 110,587	(x-) △ 700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x3,050) 6,100	(x1,220) 2,440	(x △ 1,830) △ 3,660

출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집행부는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 “1분기 실집행 실적을 고려한 불용 예상액을 감액”하였다고 밝히며, 4월말 기준 채용인원은 목표 인원의 10.4%(목표인원 125명, 채용인원 13명)로 연말까지 채용목표인원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임.
- 집행부는 채용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낮은 호봉에 (2호봉 미만) 따른 종사자들의 근무기피로 인한 채용의 어려움으로 밝혔는데 실제로 대상시설에서 제출한 채용 현황 및 채용 부진 사유<sup>30)</sup>를 통해서도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30) 채용부진사유 : “2호봉 이하로 채용하기 어려움,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입사지원이 저조”, “2호봉 이하로 채용 어려움(ex:군필자), 호봉 조정 건의,”호봉 조정(남자 교사의 경우, 군대 경력만 2년이 되어 2호봉 이하의 인력을 채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지원자 확보가 어려움” 출처:장애인복지정책과

## <참고> 시설별 채용현황

(기준일 : 20.4월말)

연번	시설명	종사자수	채용목표	채용현황	달성률(%)
			125	13	10.4
1	문혜장애인요양원	80	22	0	0.0
2	은혜장애인요양원	87	24	0	0.0
3	쉼터요양원	55	6	3	50.0
4	시립평화로운집	86	24	3	12.5
5	해맑은 마음터	52	8	3	37.5
6	한사랑마을	74	10	1	10.0
7	라파엘의집	81	17	2	11.8
8	신아재활원	64	14	1	7.1

- 한편,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교대인력 채용 협조요청’ 공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년 예산 편성시 신규채용 교대인력의 호봉을 최소 4호봉 이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최종 예산 심의과정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추후 재정당국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반영된 2호봉 이하로 신규 채용을 추진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는데<sup>31)</sup> 이를 통해서도 현재 교대인력의 급여수준이 당초 계획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저조한 사업실적으로 예상되는 이월·불용예상액을 조기에 감액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존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추경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긴급재난지원금 추경편성의 필요

31)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교대인력 채용 협조요청,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6366(2019.12.17.)

성과 요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채용 예산 감액을 통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등 감염 취약계층 거주시설의 문제점<sup>32)</sup> 등이 지적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 채용 인력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과 국비 매칭 사업으로 제2차 정부 추경시에도 감액되지 않고 정부 사업 규모가 축소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액 제출되었음.
- 현재 집행부에서 호봉 상향조정 등 채용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sup>33)</sup>로 복지부 검토 결과에 따라 인력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추가 소요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 4) 구립강북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 건립

- 구립강북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 건립 사업은 이용인원 및 프로그램의 증가 등으로 공간이 협소한 강북 장애인복지관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84억6천9백만원(시비 17억7천만원 이외 구비)으로 계획되어 있음.

32) '자원봉사자 발걸음 뚝..외출 못하는 장애인 들'<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5351&ref=A>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시설의 거주자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기 때문인데, 도움을 받던 장애인들은 물론 시설종사자들도 방역 업무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3)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채용기준 조정 요청,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8275(2020.4.17.)



**<표> 구립강북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 건립 사업 개요**

사업내용	구립 강북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시설규모	연면적 110㎡(지하1층, 지상7층)
총사업비	8,469백만원 (시비 : 1,770백만원)	복합시설	장애인복지관 별관,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20년 예산	1,281백만원(시비:885백만원)	사업기간	2018. 7월 ~ 2022. 4월 준공 예정

- '20년 본예산에는 8억 8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2천만원을 감액하여 제출하였는데, 집행부는 “공정율을 고려하여 이월 예정액을 감액” 하였다고 밝혔음.

**<표>2020년 구립강북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 건립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	2020년 제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구립 강북장애인 복지관 별관 신축사업	885	665	△220

출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본 사업은 2018년부터 별관 신축 사업을 추진하여 타당성 용역실시('18.10~12.), 시 투자심사('19.2.)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검토 과정('19.6~8.)에서 기존 사업예정 부지의 증축 불가 통보로 인한 사업 계획이<sup>34)</sup> 변경됨에 따라 공사 일정도 지연되었음.

34) '계획변경 사유 : 구 건축과 현장점검조사결과 증축 예정 부지에 기존건축물의 부대시설(지하저수조, 정화조, 조경, 주차장, 지하1층 목욕탕, 맨홀)등이 존치하고 있어 증축 불가. 복지관 부지 제외하고 경정비고 부지만 활용하여 사업 추진

<표> 구립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 변경 계획

구분	기존	변경
공사착공	'20.5	'20.11
공사준공 예정	'21.9	'22.4

- 따라서 '20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비 8억8천5백만원 중 착공일정 지연에 따라 공사비 중 다음 연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2억2천만원을 감액하여 제출하였으며, 감액의 규모 또한 강북구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정해졌다고 밝히고 있음.
- 다만, 사업 시기가 조정되어 이월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감액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차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므로 예산의 절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배치계획의 변경: 경정비고 부지만 활용



출처: 구립강북장애인복지관 확충 변경계획(안)강북구 생활보장과-2311(2020.1.15.)

**<표> 연차별 시비 지원액 변경안**

구분	기존			변경		
	'20	'21	'22	'20	'21	'22
금액(백만원)	885	885	0	665	1,105	0

5)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1) 사업개요

- ‘망우리 웰컴센터 건립’사업은 연면적 1250㎡으로 중랑숲과 용마테마공원을 연결해 망우리묘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형적 특색을 살린 작지만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인문학적 쉼공간으로 활용(홍보, 전시, 시민휴식)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임.
- '20년도 동 사업의 기정예산은 46억 7천 8백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은 45억 7천 8백만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음.

**[표]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추가경정예산(안)**

(단위: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감률
계	100	4,678	△4,578	△98%
사무관리비	10	10	0	0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	90	4,668	△4,578	△98%

## (2)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

- 집행부는 감추경 사유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절차 변경<sup>35)</sup>을 밝히고 있음.
  - 망우리공원 웰컴센터(망우동 산57-1 대지 상 공용건축물) 건축허가 협의 신청건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sup>36)</sup>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후 검토 및 협의를 가능함.
- 망우리공원 웰컴센터는 관리소부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14년부터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17년도부터 예산이 수립되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 건립 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 투입된 총 예산액은 55억 7천 8백만원('20년 예산 46억 7천 8백만원) '19년도까지 집행액은 8억 5천만원임.

35) 당초 2개월에서 9개월 이상 추가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 지연

3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②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 망우리 지역의 대표적 혐오시설로 불리었던 일대를 시민의 힐링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목적은 타당성이 있으나, 서울시가 ‘시립장사시설 등’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안에 관할 자치구와 협치·협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존재함.
- 공원 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일부 예산이 중랑구에 보내어졌고<sup>38)</sup>, 북측 사유지 모든 대지의 매입은 아니더라도 실제 묘역공간(실질)과 도시계획상 망우리묘지공원 구역(형식)도 불일치하여 묘지공원 부측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계획 부재 누락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문제<sup>39)</sup>로 인해 일부는 매입해야하는 상황인바,
- 사유지 매입 필요보상비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으로 예산 수립과 집행과 관련하여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7)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사업추진 지연

### (1) 보람일자리 사업

#### ① 사업개요

- 보람일자리사업은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에게 사회공헌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속적 사회참여 및 활력있고 안정된 인생후반기를 지원하고 디딤돌로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20년도 동 사업의 기정예산은 109억 1천 6백만원이나, 10억 9천 2백만원

38) 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 90억 예산집행(중랑구에서 용마공원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입)

39) 북측 사유지 : 308천㎡, 필요보상비 약 1,100억원

감액된 98억 2천 4백만원을 추경 편성함.

②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

- 집행부는 감추경 사유로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활동개시 시점 지연으로 보람일자리 참여자의 활동기간을 2~3개월 단축하고 이에 해당하는 참여자 활동비 10억 9천 2백만원을 감액함.
- 보람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의 지원대상이 만 50세에서 67세까지의 서울시 거주자로, 사업의 수요조사 및 사업선정이 1월에서 2월사이에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이 통상적으로 2월에 수립되어 통보됨.
  - 따라서 코로나19사태가 국내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었던 2월은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되어 대상자를 모집하고 선발하는 기간으로 보람일자리사업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19로 모집과 선발만 하고 활동을 개시하기 전 단계였으므로 추진절차에 따라 시행하기에 어려웠다고 판단됨.

[표] 2020년 보람일자리사업별 추진 실적

연번	수행기관	세부사업명	계획인원	활동예정기간(월)		예산액 (단위:천원)	사업진행 상 황
				기 간	개월		
1	서울시 50플러스재단	50+학습지원단	100	6.1~12.31	7	589,685	참여자 선발중
2		50+컨설턴트	70	6.1~12.31	7	413,501	참여자 선발중
3		장애 학생 학습지원단	30	6.1~12.31	7	165,626	참여자 선발중
4		행복도시락나눔지원단	20	6.1~11.30	6	86,211	참여자 선발중
5		학교안전지원단	110	6.1~11.30	6	388,409	참여자 선발중
6		도시농부텃밭교육단	50	6.1~10.30	5	205,976	참여자 선발중
7		일자리사업지원단	100	6.1~11.30	6	467,407	참여자 선발중
8		50+스마트기기지원단	30	7.1~12.31	6	131,536	참여자 선발중
9		어르신돌봄지원단 (구케어기버)	20	6.1~10.31	5	78,193	참여자 미선발
10		50+마을기록지원단	30	6.1~10.31	5	136,986	참여자 미선발
11		50+다문화 학습지원단	40	6.1~10.31	5	220,022	참여자 미선발
12		어린이집공동회계사무원	40	6.1~10.31	5	176,386	참여자 미선발

연번	수행기관	세부사업명	계획인원	활동예정기간(월)		예산액 (단위:천원)	사업진행 상 황
				기 간	개월		
13		청소년시설50+지원단	50	6.1~11.30	6	241,827	참여자 미선발
14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46	2.1~12.13	11	632,560	활동중
15	도심권 50플러스센터	50+에너지컨설팅트사업단	60	5.1~ 12.31	8	254,988	참여자 선발완료
16		50+건강코디네이터사업단	40	5.1~12.31	8	169,304	참여자 선발완료
17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경로당복지파트너	220	6.1~11.30	6	1,250,482	활동중단
18	(사)한국치매협회	독거어르신 후견인 지원단	60	2.1~12.31	11	226,402	활동중(비대면)
19	서울시 노인복지관협회	50+시니어지역상담가	52	6.1~12.31	7	253,868	참여자 미선발
20	동작50플러스센터	지역특화일자리	30	5.1~ 12.31	7	404,522	참여자 선발완료
			40	5.1~ 12.31	7		참여자 선발완료
21		우리동네돌봄단	500	8.1~12.31	5	562,492	참여자 미선발
22		공공복지서포터즈	134	6.1~12.31	7	570,861	참여자 선발완료
23	지역돌봄정책과	위기가정통합사례 관리	55	4.1~12.31	8	232,508	활동중
24		발달장애인평생 교육센터지원단	40	6.1~11.30	6	299,978	참여자 선발완료
2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시설지원단	220	6.1~12.31	7	1,485,553	참여자 선발완료
26	장애인자립지원과	최중증장애인 낮활동지원사업단	70	2.1~11.30	10	582,008	활동중단(일부 활동)
27	-	공모 등을 통한 신규사업	543	-	-	682,709	수행기관 미선정
합 계			2,800			10,910,000	

- 최근 3년간 보람일자리 결산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남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사업 참가인원 및 사업수행 기간을 충분히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표] 보람일자리사업 3년간 결산 및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예 산 액	7,006	8,906	10,916
예산변경	0	2,000	0
집 행 액	6,340	10,691	10,511
집행잔액	666	215	405

- 본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업 전반에 걸쳐 인원만 선발한 후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과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하는 것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 보람일자리사업의 지원대상자들이 퇴직 이후에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연령층이고 퇴직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머물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보람일자리사업의 잠정적 중단은 이 사업으로 인해 이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느냐와 지원되는 일자리가 얼마나 좋은일자리였는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수치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코로나19사태가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집행부는 보람일자리사업에 대하여 각 세부사업별 개시 시기가 다름으로 잠정적으로 2020년에 목표했던 일자리 인원은 줄이지 않고 세부사업의 기간만 줄이는 것으로 현재 추정안을 제출하였음.
  - 그러나 보람일자리사업의 사업참가자가 코로나19가 안정화되어 사업시행을 개시하더라도 보람일자리사업 특성상 6~7개월의 시기를 두고 시행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시행하지 못한 기간을 이후에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구체적으로 마련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

### ① 사업개요

○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은 지역공동체 실현 및 시장형 위주로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을 위한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20년도 동 사업의 기정예산은 56억 2천 6백만원이나, 8억 4천 4백만원 감액된 47억 8천 2백만원을 추경 편성함.

### ②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

○ 본 사업에 대한 감추경 사유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장기화에 따라 본 예산 기준 15%인 8억 4천 4백만원을 감액함.

○ 어르신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제292회 임시회)을 기정산 대비 3.7% 증가된 2억 2백만원 증액하였음.

### [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어르신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사회복지 사업보조	(x1,829) 5,626	(x1,628) 5,425	(x201) 201	○ 어르신일자리 쿠폰 - 855명(공익활동 일자리 참여 어르신)*4개월*59,000원 = 201,780천원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됨에 따라 민생여

건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저소득 노인층의 노인 대상 일자리가 축소되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의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 부문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되었음.

- 그러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비록 전액 국비였다하더라도 의회의 심의를 통과한지 불과 1달여만에 감추경을 한다는 것은 본 사업을 시행하는 집행부가 ‘사회적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업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전에 예측되었을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다고 판단됨.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1276(2020. 3. 30)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지침에 따라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중단 기간(2.27~4.5)에도 활동비를 선지급하였고,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코로나19사태 안정화 이후 일할 것이라는 참여자의 동의를 수행기관 및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게 하는 등 사업시행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공익활동 참여대상자가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사회보장시스템 연계를 통해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으로 경제상황의 취약계층인 노인 중에서도 빈곤층에 속하는 저소득 노인층이고,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비 수령 등의 현실성 없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3. 2019년 불용사업(불용액 20% 이상)

- 2019년 복지정책실의 20%이상 불용사업은 전체 사업 중 총 15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이 가운데 서울형 기초보장사업의 경우 불용률은 26.2%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약 4억원에 달해 적지 않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시행되어야 할 것임.

**<표> 복지정책실 2019년 20%이상 불용사업**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최종예산	예산현액	불용액(계)	불용률(%)
1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143,120	143,120	143,120	49,104	34.3%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9,184,056	19,184,056	18,730,755	4,925,713	26.2%
3		기본경비	371,698	371,698	371,698	138,065	37.1%
4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5,732,832	7,105,591	7,278,011	3,685,311	50.6%
5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170,000	170,000	170,000	43,994	25.8%
6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3,795,826	5,854,826	5,854,826	1,591,180	27.1%
7	인생이모작지원과	50+캠퍼스 확충	-	-	3,526,359	2,573,010	72.9%
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4,721,586	4,843,386	4,843,386	1,133,189	23.3%
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420,000	420,000	420,000	152,000	36.1%
10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시민참여)	375,000	375,000	375,000	375,000	100.0%
11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960,124	1,120,499	1,120,499	240,560	21.4%
1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234,000	234,000	234,000	53,456	22.8%
13	장애인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카드	334,880	334,880	334,880	93,583	27.9%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최종예산	예산현액	불용액 (계)	불용 률(%)
		원스톱발급 지원					
14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512,600	1,528,400	503,200	32.9%
15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4,902,852	6,112,413	6,215,027	1,291,536	20.7%

#### 4. 소결

- 복지정책실 2020년도 제2차 추경안은 국비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액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축소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안 편성의 시급함과 기존 사업이 연기되는 등의 현실적 사유는 충분히 고려해야하나, 의료급여 사업의 경우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저해 및 영세 의료기관의 재정상황까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와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돌봄 SOS와 같은 사업의 경우 '20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시범사업의 충분한 결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과다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금번 사업지연을 계기로 현장에서 사업이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촘촘한 사업설계과정이 필요할 것임.

#### 다. 시민건강국

##### 1. 추경안 유형별 검토

##### 1) 국비내시 변경

##### (1)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사업

-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정신보건시설의 직업재활 설비·장비 지원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에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추경안으로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필요한 예산을 국비매칭하여 편성한 것임.

**<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단위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31,388) 62,776	(x119,055) 238,110	(x-87,667) -175,334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x31,388) 62,776	(x119,055) 238,110	(x-87,667) -175,334	- 국비 확정내시 변경

-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와 제26조<sup>40)</sup>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조율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20년도 정신보건시설 확충 사업은 시설별 신·증개축의 경우 1,923천원/m<sup>2</sup>, 개보수의 경우 698천원/m<sup>2</sup>으로 내시를 확정하였으며, 서울시는 2019년 실수요 조사를 통해 3개 시설에 대한 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함.

40)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표> 시설별 예산 편성안**

(단위 :천원)

시군구	시설명	사업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63,106	31,388	31,388	600
도봉구	늘푸른집	개보수	24,662	12,331	12,331	-
은평구	새오름터	개보수	32,362	16,316	16,316	-
종로구	종로행복일곱터	개보수	6,082	2,741	2,741	600

**(2)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은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확정내시된 국비를 반영하는 형태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비매칭하여 편성한 것임.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의 보조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2020년도 서울시 예산은 5,923,668천원으로 배정되었음.

**<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단위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2,734,000) 5,923,668	(x2,767,000) 5,995,168	(x-33,000) △ 71,5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2,734,000) 5,923,668	(x2,767,000) 5,995,168	(x-33,000) △ 71,500	- 국비 확정내시 변경

- 올해 서울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2개 자치구에서 84개 센터를 운영하며, 작년에 비해 2개소가 감소하였음.

**<표> 2020년 서울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국고보조금 내역**

(단위 :천원)

센터(시군구)	사업규모	증감	국비 배정	지방비 부담	총 사업비
합계	84		2,734,000	6,379,340	9,113,340
성동구	5	확대	155,400	362,600	518,000
도봉구	4	유지	126,000	294,000	420,000
금천구	4	유지	126,000	294,000	420,000
서초구	4	유지	126,000	294,000	420,000
중구	3	유지	94,200	219,800	314,000
성북구	6	확대	187,800	438,200	626,000
강북구	5	유지	155,400	362,600	518,000
노원구	6	유지	187,800	438,200	626,000
은평구	6	확대	187,800	438,200	626,000
강서구	4	유지	126,000	294,000	420,000
구로구	5	유지	155,400	362,600	518,000
강동구	5	유지	155,400	362,600	518,000
송파구	7	유지	217,200	506,800	724,000
동작구	4	유지	126,000	294,000	420,000
종로구	3	유지	94,200	219,800	314,000
양천구	3	유지	94,200	219,800	314,000
동대문구	3	유지	94,200	219,800	314,000
중랑구	3	유지	94,200	219,800	314,000
서대문구	4	확대	126,000	294,000	420,000
용산구	3	신규	31,400	73,270	104,670
마포구	3	신규	31,400	73,270	104,670
영등포구	4	신규	42,000	98,000	140,000



## 2) 사업계획 축소

### (1)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축소

- 감염병 위기단계 격상에 따라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의 업무가 전면 중단됨으로써 2020년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음. 이에 예산 집행의 부진이 예상되는 10개 사업, 총 1,166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환자관리음부즈만 운영’ 사업은 환자관리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해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담 및 안내서비스를 위한 운영단체를 2회에 걸쳐 공모하였으나 유찰되어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상황임으로 최초 예산편성 사업기간인 12개월을 7개월로 축소하여 운영함에 따라 감액함.
  - 이외에 ‘시민건강포인트 운영’, ‘비만예방사업’,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 등도 보건소의 기능이 전면 감염병 관리 기능으로 재편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코로나-19 이후로 변경하여 운영함으로 감액 편성함.
  - ‘세이프약국 운영’ 및 ‘안전망병원 운영’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사업집행의 부진이 예상됨으로 진료비 및 서비스료를 감액하여 편성함.

### <표> 사업 추진 변경에 따른 감액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2020 제2차 추경안	2020 기정예산	증감	통계목
합계	10개 사업	(x-) 9,256,450	(x-) 10,422,850	(x-) △ 1,166,400	
보건의료 정책과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x-) 106,380	(x-) 151,080	(x-) △ 44,700	민간경상 사업보조
	시민건강포인트 운영	(x-) 863,750	(x-) 952,500	(x-) △ 88,75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x-) 3,801,000	(x-) 3,951,000	(x-) △ 84,500	민간경상 사업보조
				(x-) △ 65,5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세이프약국 운영	(x-) 519,433	(x-) 688,933	(x-) △ 169,5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안전망병원 운영	(x-) 286,650	(x-) 318,500	(x-) △ 31,850	민간경상 사업보조	
건강증진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x-) 2,195,877	(x-) 2,479,477	(x-) △ 283,6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비만예방 사업	(x-) 895,000	(x-) 1,080,000	(x-) △ 185,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동물보호과	동물복지 활동 지원	(x-) 37,800	(x-) 44,800	(x-) △ 2,000	사무관리비
				(x-) △ 5,000	기타보상금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x-) 450,560	(x-) 456,560	(x-) △ 6,000	기타보상금
	반려견 놀이터 조성(전환)	(x-) 100,000	(x-) 300,000	(x-) △ 200,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 (2) 대면 교육 및 행사 축소 등

-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의 대면교육 및 시민참여행사 등을 취소하여 ‘재난대비 전문 의료인력 확보 지원’,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 장독대 운영’,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사업 등에서 총 313백만원의 행사 및 교육 비용을 감액함.
- 각 사업의 대면교육을 축소 운영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 장독대 운영’ 사

업의 장담그기 행사 및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사업의 시민참여행사 등을 취소함으로써 감추경되었음.

- 해당 교육 및 행사가 축소·취소될 경우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향후 사업계획 시 해당사업의 추진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대면 교육 및 시민참여행사 취소에 따른 감액**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2020 제2차 추경안	2020 기정예산	증감	통계목
합계	4개 사업	(x360,000) 8,426,790	(x360,000) 8,817,078	(x-) △ 313,000	
보건의료 정책과	재난대비 전문 의료인력 확보 지원	(x-) 70,000	(x-) 100,000	(x-) △ 30,000	사무관리비
식품정책과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 장독대 운영	(x-) 207,000	(x-) 350,000	(x-) △ 9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 53,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동물보호과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	(x-) 141,500	(x-) 161,500	(x-) △ 20,000	사무관리비
보건환경 연구원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x360,000) 8,008,290	(x360,000) 8,205,578	(x-) △ 120,000	사무 관리비
				(x-) △ 77,288	국제화 여비

**(3) 낙찰차액 및 국외공무여비 감액**

-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약심사에 따른 낙찰차액을 감액한 사업은 모두 3개 사업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에이즈예방 홍보 및 교육 사업’ 그리고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 으로 총 304,559천원을 감액함.

**<표> 낙찰차액 감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2020 제2차 추경안	2020 기정예산	증감	예산 구분
합계	3개 사업	(x32,000) 3,952,477	(x32,000) 4,257,036	(x-) △ 304,559	
보건의료 정책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x32,000) 3,202,577	(x32,000) 3,467,136	(x-) △ 264,559	민간 위탁금
질병관리과	에이즈예방 홍보 및 교육 사업	(x-) 472,000	(x-) 500,000	(x-) △ 28,000	민간 위탁금
동물보호과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	(x-) 277,900	(x-) 289,900	(x-) △ 12,000	시설비

○ 코로나-19의 세계적 발생으로 인해 전면적으로 국외여행이 제한됨에 따라 실 소관 국외여비 127,288천원을 감액함.

-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와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사업 중 국제화여비의 일부 금액으로 코로나-19 이후 추진을 위해 의무적인 국제회의 참석 등의 일부 여비를 제외하고 감액함.

**<표> 국외업무여비 감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2020 제2차 추경안	2020 기정예산	증감	통계목
합계	2개 사업	(x360,000) 8,369,020	(x360,000) 8,616,308	△ 127,288	
보건의료 정책과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x-) 360,730	(x-) 410,730	(x-) △ 50,000	국외업무 여비
보건환경 연구원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x360,000) 8,008,290	(x360,000) 8,205,578	(x-) △ 77,288	국제화 여비
				(x-) △ 120,000	사무 관리비

### 3) 미추진 사업

#### (1)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 본 사업은 2015년 지방의료원 최초로 서울의료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서울 동북권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위한 응급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이 계획됨.
- '16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17년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사업시행 계획 수립, '18년 설계용역 준공, '19년 공사착수를 착수하여 '20년 4월 현재 지상3층 골조공사 진행중임.
- 응급의료 전용건물 및 감염관리 특화 응급의료시설 구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년 1월 증축공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건설설계용역을 착수함에 따라 공정이 순연되어 금년도 예산 투입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응급의료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전액을 감추경 편성함.

**<표>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감추경안**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2020 제2차 추경안	2020 기정예산	증감	통계목
합계	1개 사업	-	(x0) 3,385,641	(x0) △3,385,641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	(x0) 3,385,641	(x0) △3,385,641	시설비

-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의 증축공사 계획의 필요성으로 응급의료시설 구현을 위한 공간 부족, 권역응급의료센터 필수시설 확보 및 의료진 이동의 어려움 등

을 들고 있음.

- 하지만 최초의 투자심사 이후의 사업계획 변경 과정을 살펴보면, 센터의 총 면적 및 규모, 병상 등의 계획에서 축소되었다가 다시 증가되는 등 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음.
- '16년 제1차 투자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되었으나, 재원 확보와 관련한 계획 등이 부족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바가 있음.
- 최초 건립 계획 수립 시 미래 수요 예측 등을 통해 필요한 규모 및 사업에 대한 분석으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투자심사 이후 사업 계획 변경 과정

(단위 :백만원)

구분	'16년 서울시 투자심사(3차) 확정 계획 ('16.8.)	'17년 서울시 보건 의료정책 과 재방침 계획 ('17.8.)	'18년 서울시 보건 의료정책 과 재방침 계획 ('18.3.)	'18년 최종 설계 및 공사 진행 중 ('18.10~)	'20년 추가 증축 계획 ('20.1.)	
예산	18,892 (공유재산가 미포함 시 14,212백만원)	22,408 (공유재산가 미포함 시 17,728백만원)	22,408 (공유재산가 미포함 시 17,728백만원)	22,408 (공유재산가 미포함 시 17,728백만원)	28,078 (공유재산가 미포함 시 23,398백만원)	
총 면적	4,350m <sup>2</sup>	5,999m <sup>2</sup>	3,750m <sup>2</sup>	3,670m <sup>2</sup>	4,950m <sup>2</sup>	
규모	총 5층 (지상 4, 지하 1)	총 6층 (지상 5, 지하1)	총 3층 (지상 2, 지하1)	총3층 (지상 3)	총 5층 (지상5)	
병상	구분	병상	구분	병상	구분	병상
	응급의료센터	34	응급의료센터	31	응급의료센터	27
	증환자실	12	증환자실	12	증환자실	12
	일반병상	31	일반병상	20	일반병상	20
	합계	77	합계	63	합계	59

## 2. 추경안 세부사업 검토

### 1)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사업

-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전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서울시 감염병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계획됨.
  - 최초 서울시 감염병전문센터 설치 계획 수립 시 보라매병원 감염병전문센터 설치 예정지인 동작구민회관 및 시설관리공단 부지에 대한 대지 확보계획이 필요함을 밝힌바 있으며 관련 부지에 대한 동작구청과의 협의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어 왔음.
- 2016년 사업계획 수립 당시 현 시설물 이전 계획 선행, 공원대체용지 확보 필요, 감염병전문센터에 대한 주민 반대 예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2017년 7월 지역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 최근 코로나-19 대응 중 동작구청에서 신청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지의 공공기여방안을 활용하여 구민회관 이전을 약속함에 따라 중단된 안심호흡기 센터를 신속히 건립하고자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함.

**<표>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추경안**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2020 제2차 추경안	2020 기정예산	증감	예산 구분
합계	1개 사업	(x0) 180,000	-	(x0) 180,000	
보건의료 정책과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x0) 170,000	-	(x0) 170,000	시설비
		(x0) 10,000	-	(x0) 10,000	시설부대비

-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와 동력이 마련된 만큼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서울시 감염병전문센터 설치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할 것임.

## 2) 난임 등 출산 관련 사업

- 이번 추경안에는 ‘난임부부 지원’, ‘모자건강센터 설치 운영’,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1,461백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표> 난임 및 출산 지원 관련 감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2020 제2차 추경안	2020 기정예산	증감	예산 구분
합계	3개 사업	(x2,637,200) 8,988,806	(x2,637,200) 10,449,806	△ 1,461,000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지원	(x2,637,200) 7,037,806	(x2,637,200) 7,149,806	(x-) △ 112,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모자건강센터 설치 운영	(x-) 450,000	(x-) 1,200,000	(x-) △ 750,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 지원	(x-) 1,501,000	(x-) 2,100,000	(x-) △ 599,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난임 지원 정책인 신선배아 7회 지원 이후 서울형 지원사



업으로 3회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최근 4년간 사업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2017년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23,160건
2018년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636건
2019년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840건
2020년도	○ (국가형)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585건 ○ (서울형)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2건

- 국가 난임지원사업의 경우 보조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2020년도 서울시 예산은 5,713,800천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서울형 사업은 시비 100%로 1,151,156천원이 배정되어 있음.

-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시민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각 자치구에 난임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교부되었던 자치구 지원금을 일부 삭감함.

**<표> 난임부부 지원사업 감액 상세내역**

과목구분	기존 내역	변경내역
자치 단체 경상 보조금	○ 난임부부지원사업(국가형) 5,713,800,000원 = 5,713,800천 원	○ 난임부부지원사업(국가형) 5,713,800,000원 = 5,713,800천 원
	○ 난임부부지원사업(서울형) 1,151,156,000원 = 1,151,156천 원	○ 난임부부지원사업(서울형) 1,151,156,000원 = 1,151,156천 원
	○ 자치구 난임사업 지원 20,000,000원*12개 구 = 240,000천 원	○ 자치구 난임사업 지원 16,000,000원 * 8개 구 = 128,000천 원
증감사유		
○ 자치구 난임사업 지원 7개소 * 16,000천 원 = 112,000천 원 감액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비 일부 감추경		

- ‘모자건강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난임주사 및 임신전 건강관리 공간을 조성하여 임신전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 당 최대 150백만원까지를 지원하여 별도 공간 마련을 위한 공간 통합·재배치 및 인테리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19년까지 5개의 자치구에 모자건강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모자건강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표> 모자건강센터 단계별 확충(안)(2020.04)**

구 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
모자건강센터 신규 확충	20개소	8개소	6개소	6개소
소요예산 (자치단체 자본 보조)	30억	12억	9억	9억

※ 5개 자치구 기 설치 및 운영 : 도봉, 은평, 중랑, 성동, 마포

- 또한, 모자건강센터 신규 설치를 위한 자본보조 이외에 난임종합지원을 위한 보조인력비를 신규 모자건강센터를 포함한 13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음.

**<표> 모자건강센터 설치 운영 예산 상세내역(2020.04)**

예산과목 (통계목)	예산액	산출내역	예산사업 과목
합 계	1,440,000	시비 100%	
자치단체 자본보조	1,200,000	모자건강센터 설치 지원 150,000천원×8개구	모자건강 센터
자치단체 경상보조	240,000	난임종합지원 보조인력비 18,000천원 × 13개구	난임부부 지원 사업

-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 및 자치구 선정 계획이 4월에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다르게 이번 추경예산에는 5개소에 대한 설치 지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함.
- 또한, 자치구 난임종합지원을 위한 보조인력비 지원은 코로나-19 로 인한 사업 수행 기간의 단축으로 자치구당 16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괄 축소하여 편성함.

**<표> 모자건강센터 감액 상세내역**

과목 구분	기존 내역	변경내역
자치 단체 경상 보조금	○ 모자건강센터 설치 운영 지원 150,000,000원 * 8개소 = 1,200,000천원	○ 모자건강센터 설치 지원 3개소 * 150,000천원 = 450,000천원
	증감사유	
	○ 모자건강센터 설치 지원 5개소 * 15,000천원 = 750천원 감액 ○ 코로나19로 인한 자치구 사업 지연 및 연기로 감추경	

- 난임 종합지원계획에 따라 모자건강센터를 설치하고 난임부부 및 출산 관련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세부사업 간의 통합적 추진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지원’ 사업은 가임기 남녀의 임신에 장애가 되는 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중재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임신을 통한 미래세대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 들어 25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하고 남성정액자가검진키트를 추가 제공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표>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지원 사업 변경내역**

구 분	‘19년	‘20년
사업자치구	12개구	25개 전자치구 확대
서비스 내용	11개 건강검진	남성정액자가검진키트 제공 추가
대상자 관리	대상자 관리 시스템 미흡 설문평가, 상담매뉴얼 부재 직원 교육 프로토콜 부재	대상자 관리 시스템, 온라인 설문 평가 및 자동 답변 업무지침서 개발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심포지엄 및 교육 프로토콜 개발 적용

- 코로나-19로 인해 자치구 보건소 남녀의 건강출산 프로그램 운영 지연을 고려하여 감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교부금을 12개월 중 7개월을 운영하는 것으로 감액함.

**<표>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 감액 상세내역**

과목 구분	기존 내역	변경내역
자치 단체 경상 보조금	○ 자치구 건강출산지원 프로그램 운영 57,200,000원 * 25개소 = 1,430,000천원	○ 자치구 건강출산지원 프로그램 운영 33,240,000원 * 25개소 = 831,000천원
	○ 남성 난임 조기발견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500,000,000원 = 500,000천원	○ 남성 난임 조기발견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500,000,000원 = 500,000천원
	증감사유	
	○ 자치구 보건소 임신준비 지원프로그램 운영 23,960천원 * 25개구 = △599,000천원 ○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치구 보건소 남녀 건강출산 프로그램 운영	

- 3개의 사업은 자치구의 난임 관련 사업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감소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에서의 사업운영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었음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나, 자칫 향후 보건소에서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부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2019년 불용사업(불용액 20% 이상)**

- 2019년 사업 예산 집행 결과 시민건강국의 20% 이상 예산 불용사업은 10개 사업이며 불용률이 50% 이상인 사업도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 ‘서울형 유급병가’, ‘가축방역-살처분보상금(시비)’ 등 세 개 사업 임. 특히 ‘서울형 유급병가’의 경우 매년 집행실적에 대한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표> 시민건강국 2019년도 불용사업(20% 이상)

부서	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불용률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운영	567,467	443,088	124,379	21.9%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	218,000	52,500	165,500	75.9%
질병관리과	서울형 유급병가	6,246,214	2,304,920	3,941,294	63.1%
	외국인근로자 등 감염병 관리사업	40,000	22,735	17,265	43.2%
동물보호과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433,250	307,232	126,018	29.1%
	가축방역-살처분보상금(시비)	2,000	-	2,000	100%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 서울케어 브랜드 확산	101,000	76,100	24,900	24.7%
은평병원	은평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확충	76,435	58,936	17,499	22.9%
서북병원	서북병원 서울케어 브랜드 확산	60,000	47,000	13,000	21.7%
서북병원	서북병원 공기청정기 구입	64,332	50,920	13,412	20.8%

#### 4. 소결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보건소의 일반업무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으나,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경우 시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밀접하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관련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센터 설립 사업이 신규 추진됨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인프라, 인력, 예산확보 등 개별 사업 점검이 아닌 서울시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의 큰 틀을 기본으로 각각의 사업을 배열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 지난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등 신종 감염병이 발생한 시기마다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이후 점차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등 관심이 감소되어 온

것이 현실임.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야 함.

#### 4 결론

-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다양한 형태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하여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금번 추경안은 중앙정부의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대한 지방비 매칭분을 마련하기 위한 감추경의 성격이 있다고 하겠음. 따라서 지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그 성격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전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를 창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의 측면에서 편성된 감액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보건 및 복지관련 예산의 축소는 재난상황시 사회적위험이 가장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예산의 감액이라는 측면에서 동 추경안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부 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의 감액 없이 이월대상 예산을 감액하거나 연차별 집행계획의 변경을 통한 감액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형태의 감액은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충분한 세입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2021년도 본예산의 편성과정부터 사업에 난항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세원이 한정적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2021년 이후 타 사업의 예산을 줄이거나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즉, 이는 예산의 절감보다는 집

행의 유보성격으로 보임.

- 다수 사업의 예산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채용의 유보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축소로 보이나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사업관리 및 수요예측의 부실 등의 문제로 연내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한 사업들도 있는바.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을 보다 면밀히 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산심의결과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사업조정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특히,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과 같은 예산은 감액으로 인해 사업목표 및 사업효과의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19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020년에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그 밖에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예를들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같은 경우 2019년 49억2천만원이 불용(26.2%)가 된바 있음. 기초보장제도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 맞는 분석일 수 있으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조건을 매년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볼 때, 사업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료됨. 특히, 몇 개 사업의 감액안은 고령자고용이나 시장에서 고용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고용관련 예산 또는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할 것임.
- 덧붙여 전 세계적 감염 확산세 및 실물지표 추이 등 감안시, 민생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공공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추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국외여비 및 일부 미집행 인건비 등에 대한 감액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임.



-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점, 현재의 사회안전망보다 보호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금번 추경안의 제출사유는 타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사업조정을 통해 세출을 재조정하는 것은 2020년 예산심의과정에서의 논의된 사업들이 의회의 예산심의결과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 또한 한시지원사업을 위한 세출조정이 올해 뿐만 아니라 차년도의 경상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의에 있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감소가 동 추경안이 목표로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